#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 연차보고서

2026. 2. 27.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곽희필

#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 1
나. 지배구조 현황 ····· 2
1) 조직도 ····· 2
2) 지배구조의 특징 ····· 2
3) 지배구조 현황(요약) ····· 2
다. 관련 규정 ····· 3

2. 이사회 ····· 4
가. 역할(권한과 책임) ····· 4
1) 총괄 ····· 4
2) 구체적 역할 ····· 4
가)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총회에 제출할 사항 ····· 4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다) 사업계획 승인 ····· 5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5
마) 자회사의 취득/매각 ····· 5
바) 부동산 및 기타자산의 취득 및 매각 ····· 5
사) 정관 및 중요 규정 등에 관한 사항 ····· 6
아)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 6
자)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6
차)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카)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7
타) 책무구조도의 마련 및 변경 ····· 7
파) 이사에 관한 사항 ····· 7
하) 기타 ····· 8

나. 구성(이사) ····· 8
1) 총괄 ····· 8
2) 구성원 ····· 8
3) 요약 ····· 13
다. 활동내역 ····· 15
1) 활동내역 개요 ····· 15
2) 회의 개최내역 ····· 15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및 기준 ····· 28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의사회 의장 선임 사유 ····· 29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31
가. 역할(권한과 책임) ····· 31
나. 구성 ····· 31
다. 선임기준 ····· 32
1) 후보 자격요건 ····· 32
2) 후보 추천 절차 ····· 32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 32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32
1) 활동내역 개요 ····· 32
2) 회의 개최내역 ····· 33
3) 평가 ····· 34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 34
1) 대표이사 후보 ····· 34
가) 후보자 인적사항 ····· 34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4) 경력
나) 후보 제안자 ····· 35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35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2) 후보자 추천경로
라) 자격충족 여부 ····· 36
(1) 소극적 요건,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3) 본인 소명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 37
2) 대표집행임원 후보 ····· 37
3) 감사위원 후보 ····· 38
가) 후보자 인적사항 ····· 38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4) 경력
나) 후보 제안자 ····· 39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39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2) 후보자 추천경로
라) 자격충족 여부 ····· 40
(1) 소극적 요건,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3) 본인 소명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 41
4) 사외이사 후보 ····· 41
가) 후보자 인적사항 ····· 41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4) 경력, (5) 사외이사 경력
나) 후보 제안자 ····· 43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43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2) 후보자 추천경로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 44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44
(1) 소극적 요건,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4) 본인 소명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 47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48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48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49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3) 후보군 현황
차)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 49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49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 50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 50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50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 50
가) 이사회 ····· 50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60
다) 감사위원회 ····· 60
라) 위험관리위원회 ····· 65
마) 보수위원회 ····· 69
바) 내부통제위원회 ····· 71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 72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현황 ····· 74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 74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75
1) 사외이사 레이청야오 ····· 75
2) 사외이사 이장영 ····· 76
3) 사외이사 김종열 ····· 78
4) 사외이사 통슈멍 ····· 79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81
바. 사외이사 평가 ····· 81
1) 평가 개요 ····· 81
2) 내부평가 ····· 81
가) 내부평가 개요 ····· 81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81
(1) 총론,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3) 외부평가 ····· 82
가) 외부평가 개요 ····· 82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82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 82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82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83
1) 사외이사 김치중 ····· 83

2) 사외이사 윤성만 ····· 83
3) 사외이사 권혁준 ····· 84
4) 사외이사 레이청야오 ····· 84
5) 사외이사 이장영 ····· 84
6) 사외이사 김종열 ····· 85
7) 사외이사 통슈멍 ····· 85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86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86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88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88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88
1) 일반 ····· 88
2) 비상계획 ····· 88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88
1) 소극적 요건 ····· 88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89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89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 89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 90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 90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 90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 91
3) 후보군 현황 ····· 91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91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 91

6. 감사위원회 ····· 92
가. 역할(권한과 채무) ····· 92
1) 총괄 ····· 92
2) 구체적 역할 ····· 92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 92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 93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 93
라) 재무제표 검토 등 ····· 93
마) 기타 내부통제 주요활동 보고 수령 등 ····· 94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 94
1) 총괄 ····· 94
2) 구성원 ····· 9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95
1) 활동내역 개요 ····· 95
2) 회의 개최내역 ····· 95
3) 평가 ····· 101
라. 감사보조조직 등 ····· 101
1) 감사보조조직 설치현황 ····· 101
2) 외부전문가 활용 내역 ····· 102

7. 위험관리위원회 ····· 103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03
1) 총괄 ····· 103
2) 구체적 역할 ····· 103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103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 104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104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 104
마) 기타 ····· 105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 105
1) 총괄 ····· 105
2) 구성원 ····· 10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05
1) 활동내역 개요 ····· 105
2) 회의 개최내역 ····· 106
3) 평가 ····· 112

8. 내부통제위원회 ····· 113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13
1) 총괄 ····· 113
2) 구체적 역할 ····· 113
가)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113
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정착방안 마련 ····· 113
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114
라)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 114
마)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보고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조치 요구 ····· 114
나. 구성(내부통제위원회위원) ····· 114
1) 총괄 ····· 114
2) 구성원 ····· 11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15
1) 활동내역 개요 ····· 115
2) 회의 개최내역 ····· 115
3) 평가 ····· 116

9. 경영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에 한함) ····· 116

10. 리스크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에 한함) ····· 116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117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117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 118
가. 총괄 ····· 118
나. 구성 ····· 118
1) 총괄 ····· 118

2) 구성원 ····· 120
3)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은행에 한함) ····· 120
다. 권한과 책임 ····· 120
1) 총괄 ····· 120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121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121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121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 121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 121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118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 119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19
1) 의사결정 절차 ····· 119
2) 활동내역 및 개최내역 ····· 119
3) 평가 ····· 125

2. 보수체계 ····· 126
가. 주요사항 ····· 126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 126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 126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126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은행에 한함) ····· 127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 127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 127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 127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 128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 128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 128
9)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은행에 한함) ····· 128
나. 보수 세부사항 ····· 128

1) 임직원 총보수 ····· 128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 128
3) 직급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임직원 1인당 평균액) ····· 129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129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 129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 130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 130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 131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 131
6) 이연보수의 조정 ····· 131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 132
8)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 132
9)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 132
10)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 건수 및 금액(은행에 한함) ····· 132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1. 지배구조 일반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에이비엘생명보험(이하 “당사”라 합니다)은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는 한편, 이사회가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경영진의 업무 집행 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적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25년 말 현재 이사회의 60%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보험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이고 적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2025년 말 현재 보험 및 경영분야 1명, 보험분야 1명, 금융분야 1명, 회계분야 1명, 금융 및 정보기술 1명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을 본점에 비치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개정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은 물론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을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지배구조의 구성·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지배구조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 공시실 - 경영공시)

https://www.abllife.co.kr/st/pban/admPban/gvrncStrtPban/2025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

[작성기준일:202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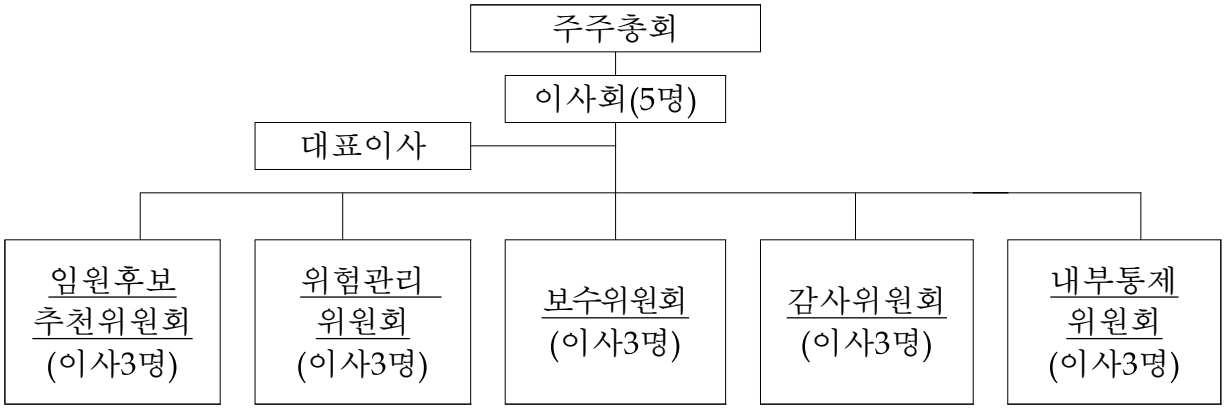


###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권이 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이사는 사내이사 1인, 비상임이사 1인, 사외이사 3인으로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회사의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독립성 및 경영진 견제 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말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등 5개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견제 기능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3인을 모두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단, 내부통제위원회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3) 지배구조 현황(요약)

[작성기준일:2025.12.31.]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 의장 (이름/상임·사외·비상임여부) | 관련 규정 |
|---|---|---|---|---|
| 이사회 | 최고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등 | 3명/5명 | 김치중 /사외이사 | 정관 제31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장 및 이사회 규정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대표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등 | 2명/3명 | 사외이사 | 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장 및 임원후보추천 |

| | | | | |
|---|---|---|---|---|
| | | | | 위원회규정 |
| 감사<br>위원회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사 | 3명/3명 | 김치중<br>/사외이사 | 정관 제34조<br>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장 및<br>감사위원회규정 |
| 보수<br>위원회 | 임원 성과 보상의 기본방침, 전략, 기준 수립 및 변경 등 | 2명/3명 | 윤성만<br>/사외이사 | 정관 제34조<br>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장 및<br>보수위원회규정 |
| 위험관리<br>위원회 |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전략, 기준 수립 및 변경 등 | 3명/3명 | 윤성만<br>/사외이사 | 정관 제34조<br>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장 및<br>위험관리위원회규정 |
| 내부통제<br>위원회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전략, 기준 수립 및 변경 등 | 2명/3명 | 권혁준<br>/사외이사 | 정관 제34조<br>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장 및<br>내부통제위원회규정 |

주) 2025년 7월 1일 이사회 구성 변경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미개최로, 공시일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미선임.

## 다. 관련 규정

- ㅇ 첨부1. 정관
- ㅇ 첨부2. 지배구조내부규범
- ㅇ 첨부3. 이사회규정
- ㅇ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ㅇ 첨부5. 감사위원회규정
- ㅇ 첨부6. 보수위원회규정
- ㅇ 첨부7. 위험관리위원회규정
- ㅇ 첨부8. 내부통제위원회규정

## 2. 이사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건전하고 적법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경영 전략 및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며,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에 관한 사항, 대주주·이사와 회사 간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기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 사항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경영활동의 기준 · 절차 ·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회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을 지원합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총회에 제출할 사항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는바,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기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362조, 정관 제18조, 이사회규정 제8조). 이에 따라 2025년 제2차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2025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제5차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2025년 7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연도예산 및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승인하고(단, 연도 영업예산 내 영업비용은 제외),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정관 제33조 제4항 제3호, 이사회규정 제8조).

2025년도 예산계획의 수립은 당사 2025년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2025년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5년 제3차 이사회에서 2025년 예산은 총 5,737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 제72기(2024.1.1.~2024.12.31.) 결산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25년 1월에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5년 제1차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25년 2월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쳐 2025년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결산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였고, 2025년 3월 31일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 다) 사업계획 승인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33조 제4항 제1호, 이사회규정 제8조). 이에 따라 2025년 제3차 이사회에서 2025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 「보장성 영업 체질 강화」, 「디지털 전환 시너지 강화」를 상세 전략 이행 목표로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제6차 이사회에서 2025년 1분기 경영목표 달성 현황을, 2025년 제13차 이사회에서 2025년 3분기 재무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이사회는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회사 조직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정관 제33조 제4항 제4호, 이사회규정 제8조). 다만, 2025년에는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이 없었습니다.

### 마) 자회사의 취득·매각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하고(상법 제393조, 이사회규정 제8조),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15조). 다만, 2025년도에는 자회사의 취득·매각의 건이 없었습니다.

### 바) 부동산 및 기타자산의 취득 및 매각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3조). 이에 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 매각 및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기타자산의 취득 및 매각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이사회규정 제8조). 다만, 2025년에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매각의 건이 없었습니다.

### 사) 정관 및 중요 규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정관 제33조 제4항 제2호, 이사회규정 제8조).

이에 따라. 2025년 제3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 개정 및 제22조의2의 신설에 따른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25년 3월 31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승인되었습니다. 2025년 제6차 이사회에서 당사가 우리금융지주에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조항을 그룹사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25년 7월 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승인되었습니다. 각 정관 개정 시, 주주총회 직후 소집된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중요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제3차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제정, 자본관리정책 개정을, 2025년 제7차, 제9차, 제11차, 제12차 및 제14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 제정 및 총 15건의 중요 규정에 대한 제・개정을 각 의결하였습니다.

### 아)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정관 제33조 제4항 제5호, 이사회규정 제8조). 또한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내부통제정책 제7조).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제7차 이사회에서 위험관리기준 규정 개정,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정책 전면 개정을 제12차 이사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규정 개정을 각 의결하였습니다.

### 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는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의 목표, 원칙 및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2, 정관 제33조 제4항 제5호의2, 이사회규정 제8조).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내부통제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2026년에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하여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반 위험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목표 및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을 결정합니다.

### 차)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정관 제33조 제4항 제6호, 이사회규정 제8조). 다만, 2025년에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에 관련된 건이 없었습니다.

### 카)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당사는 대주주・이사와의 거래 등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등과 계열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 및 심의・의결을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7호, 정관 제33조 제4항 제6호, 이사회규정 제8조). 이에 따라 2025년 제2차 이사회에서 동양생명금융서비스와의 신규 GA제휴를, 2025년 제7차 이사회에서 그룹사간 거래 포괄 승인을 포함하여 총 8건의 계열사 간 거래를 그리고 2025년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3차 및 제14차 이사회에서 총 17건의 계열사 간 거래를 각 승인하였습니다.

### 타) 책무구조도의 마련 및 변경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책무구조도의 마련 및 변경에 대해서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이사회규정 제8조). 이에 따라 2025년 제3차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 마련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제7차, 제9차 및 제14차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 변경을 각 의결하였습니다.

### 파) 이사에 관한 사항

과거 당사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2025년 제4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정관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표이사의 선

임・해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정관 제29조 제1항, 이사회 규정 제8조). 이에 따라, 2025년 제5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 확정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정관 제32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조, 이사회규정 제5조).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2025년도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제7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및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6조). 이에 따라 2025년 제4차 및 제7차 이사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각 위원 선임 및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의결하였습니다.

### 하) 기타

당사 이사회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 해임(지배구조법 제25조, 제28조), 선임계리사의 선・해임(보험업법 제181조)에 대해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제8차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의 선임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주요업무 집행책임자의 선・해임을 의결하며(지배구조법 제8조, 이사회규정 제8조), 이에 따라 2025년 제4차, 제7차 이사회에서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선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위의 각 사항 이외에도, 기타 법령에서 이사회가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항 또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의 각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393조, 정관 제31조, 이사회규정 제8조).

## 나. 구성(이사)

### 1) 총괄

당사는 상법 및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두며,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하되, 그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합니다(정관 제27조). 이사회 최소 인원수를 5명으로 정한 것은,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구성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사외이사가 최소 3명 이상 필요한 것은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최소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2025년 말 현재 당사 이사회는 모두 5명의 이사(사내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으며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정관 제28조). 이는 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하는 경우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건전하고 적법한 경영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로 설정할 경우 직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다른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당사는 이사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고, 특히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3항).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존 사내이사 1명의 연임(임기 1년), 비상임이사 1명의 연임(임기 1년), 사외이사 2명의 연임을(임기 1년)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직전에 개최된 2025년 7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1명(임기 2년), 비상임이사 1명(임기 3년), 사외이사 3명(임기 2년)의 선임을 각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말 현재 당사 이사회는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보험 및 경영분야 1명, 보험분야 1명, 금융분야 1명, 회계분야 1명, 금융 및 정보기술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구성원

#### 가) 이사 곽희필

-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장
-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 임기: 2025. 7. 1. ~ 2027. 6. 30.

- 경력: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이사 <2023-2025>
  신한라이프FC1 사업그룹 부사장 <2021-2023>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영업채널본부 부사장 <2019-2021>
  ING생명보험 FC채널본부 부사장 <2018-2019>

### 나) 이사 김치중

- 사외이사
-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임기: 2025. 7. 1. ~ 2027. 6. 30.
- 경력: 메트라이프 금융서비스 사외이사 <2019-2022>
  보험상품위원회 위원장 <2016-2017>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외이사 <2013-2019>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및 겸임교수 <2013-2018>
  KB생명보험 사외이사 <2010-2013>
  보험연수원 원장 <2008-2011>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2005-2008>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장 <2003-2005>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2002-2003>

### 다) 이사 양기현

- 비상임이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임기: 2025. 7. 1. ~ 2028. 6. 30.
- 경력: 우리금융지주 사업성장부 <2019-현재>
  우리은행 미래전략부 <2014-2019>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부 <2002-2014>

### 라) 이사 윤성만

- 사외이사
- 보수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임기: 2025. 7. 1. ~ 2027. 6. 30.
- 경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교수 <2012-현재>

식품안전정보원 비상임감사 <2023-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평가자문위원 <2023-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2015-현재>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2015-현재>
한국회계학회 연구부회장 <2012-현재>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주] <2012-현재>
주) 2026년 1월 회장으로 취임

### 마) 이사 권혁준

- 사외이사
-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임기: 2025. 7. 1. ~ 2027. 6. 30.
- 경력: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2015-현재>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2021-현재>
  한국지급결제학회 부회장 <2021-현재>
  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 <2021-현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위촉위원 <2020-현재>
  한국블록체인학회 발기인 및 운영위원 <2020-현재>
  보험개발원 블록체인 중점사업 자문교수 <2020-현재>
  손해보험협회 블록체인 자문교수 <2020-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평가 위원 <2018-2023>

### 바) 이사 시예저치앙

-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장
- 이사회 의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 임기: 2025. 4. 1. ~ 2025. 7. 1.
- 경력: ABL생명보험 비상임이사 <2019.3.14 - 2019.4.4>
  대서양 재보험회사 북아시아 총경리 <2016-2018>
  미국신리보험중국유한회사 총경리 <2010-2016>
  Lloyd's 재보험중국유한회사 부총경리 <2006-2010>

### 사) 이사 송민용

- 사내이사, CFO

- 임기: 2024. 4. 1. ~ 2025. 3. 31.
- 경력: ABL생명 재무실장 <2016-2022>
  알리안츠생명 재무회계부, 기업조정부장 <2010-2016>
  삼정회계법인 <2005-2010>

### 아) 이사 리쭝위엔

- 비상임이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임기: 2025. 4. 1. ~ 2025. 7. 1.
- 경력: 다자보험그룹 해외업무총괄 <2015-현재*>
  Keefe, Bruyette &Woods (KBW) <2011-2012>
  ING그룹 Associate <2006-2011>

### 자) 이사 이장영

-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임기: 2024. 4. 1. ~ 2025. 7. 1.
- 경력: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5-현재*>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2012-2015>
  금융감독원 부원장(은행감독 담당, 제재심의위원장) <2008-2011>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국제 및 거시건전성감독 담당) <2005-2008>
  감사원장 경제금융특별보좌관 <2004-2005>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자문관 <2000-2003>
  국제통화기금(IMF) Staff Economist <1993-1996>

### 차) 이사 김종열

- 사외이사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 임기: 2024. 4. 1. ~ 2025. 7. 1.
- 경력: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2022-현재*>
  AIG손해보험 부사장 <2014-2020>
  라이나생명 고문 <2014.02-2014.09>
  하나 HSBC생명 부사장 <2012-2013>
  대한생명 상무(상품담당 총괄임원) <2003-2012>

### 카) 이사 레이청야오

- 사외이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임기: 2025. 4. 1. ~ 2025. 7. 1.
- 경력: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강사, 부교수, 교수 <2001-현재*>
  China Great Wall industry본사 당조 서기 비서 <1996-1998>

### 타) 이사 통슈멍

- 사외이사
- 선임사외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임기: 2025. 4. 1. ~ 2025. 7. 1.
- 경력: 우하이궈쉬안에너지유한회사 이사장 <2022-현재*>
  중해국제안보회사 이사장 <2018-현재*>
  동방문창투자유한회사 이사장 <2014-현재*>
  베이징동방바이다투자유한회사 이사장 <2012-현재*>

*퇴임 이사의 경우 퇴임 시점 현재를 의미

### 파) 요약

[작성기준일자: 2025.12.31.]

| 성명 | 상 임 / 사 외 / 비상임 | 직위 | 경력 | 최초 선임 일 | 임기 만료 일 | 재임 기간 | 담당위원회 |
|---|---|---|---|---|---|---|---|
| 곽희필 | 상임 | 대표이사 | -ABL생명 대표이사<br>-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이사<br>-신한라이프FC1 사업그룹 부사장<br>-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영업채널본부 부사장<br>-ING생명보험 FC채널 본부 부사장 | 2025. 7.1. | 2027. 6.30. | 6개월 | 내부통제 위원회 |
| 김치중 | 사외 |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 -메트라이프 금융서비스 사외이사<br>-보험상품위원회 위원장<br>-메트라이프생명 사외이사<br>-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및 겸임교수 | 2025. 7.1. | 2027. 6.30. | 6개월 |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

| | | | | | | | |
|---|---|---|---|---|---|---|---|
| | | | -KB생명보험 사외이사<br>-보험연수원 원장<br>-손해보험협회 부회장<br>-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 | | | |
| 양기현 | 비상임 | - | -우리금융지주 사업성장부 본부장<br>-우리은행 미래전략부<br>-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부 | 2025. 7.1. | 2028. 6.30. | 6개월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
| 윤성만 | 사외 | 위험관리 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교수<br>-식품안전정보원 비상임감사<br>-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평가자문위원<br>-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br>-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br>-한국회계학회연구 부회장<br>-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2025. 7.1. | 2027. 6.30. | 6개월 | 위험관리 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
| 권혁준 | 사외 | 내부통제 위원회 위원장 |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br>-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br>-한국지급경제학회 부회장<br>-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br>-한국행동과학 연구소 위촉위원<br>-한국블록체인학회 발기인 및 운영위원<br>-보험개발원 블록체인 중점사업 자문교수,<br>-손해보험협회 블록체인 자문교수<br>-한국증권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평가 위원 | 2025. 7.1. | 2027. 6.30. | 6개월 | 위험관리 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 시예저 | 상임 | 대표이사, | -대서양 재보험회사 | 2019. | 2025. | 74 | |

| | | | | | | | |
|---|---|---|---|---|---|---|---|
| 치앙 | | 이사회 의장 | 북아시아 총경리<br>-미국신리보험중국유한회사, 총경리<br>-Lloyd's 재보험중국유한회사, 부총경리 | 4.5. | 7.1. | 개월 |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
| 송민용 | 상임 | CFO | -삼정회계법인 | 2022. 9.22. | 2025. 3.31. | 30 개월 | - |
| 리쭝위엔 | 비상임 | - | -Keefe, Bruyette &Woods (KBW)<br>-다자보험그룹 해외업무 총괄 | 2021. 11.23. | 2025. 7.1. | 43 개월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
| 이장영 | 사외 |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통제 위원회 위원장 | -김앤장 법률사무소<br>-한국금융연수원 원장<br>-금융감독원 부원장 | 2023. 3.31. | 2025. 7.1. | 27 개월 |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
| 김종열 | 사외 | 위험관리 위원회 위원장 | -숭실대 겸임교수<br>-AIG손해보험 부사장<br>-라이나생명 고문<br>-하나 HSBC생명 부사장 | 2023. 3.31. | 2027. 7.1. | 27 개월 |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
| 레이청야오 | 사외 |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강사, 부교수, 교수 | 2021. 4.1. | 2025. 7.1. | 50 개월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
| 통슈멍 | 사외 | 선임사외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장 | -우하이궈쉬안에너지 유한 회사 이사장<br>-중해국제안보회사 이사장<br>-동방문창투자유한회사 이사장<br>-베이징동방바이다투자 유한회사 이사장 | 2023. 10.16. | 2025. 7.1. | 20 개월 | 보수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 다. 활동내역

###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는 총 14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100%입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가)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 2025. 2. 14.(금) 10:45

〔안건 통지일 : 2025. 2. 13.〕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가결 |
|---|---|---|

| | | | | | | | | | 여부 |
|---|---|---|---|---|---|---|---|---|---|
| 1. 이사 성명 | | 시예 저치앙 | 송민용 | 리쭝 위엔 | 레이청 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4. 의결 안건[1] | | | | | | | | | |
| | 가. 제72기 결산보고서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제72기 영업보고서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 안건

가) 2024년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 승인

나) 2024년 영업보고서 승인

## 나) 2025년도 제2차 이사회 : 2025. 3. 14.(금) 14:00

〔안건 통지일 : 2025. 3. 11.〕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시예 저치앙 | 송민용 | 리쭝 위엔 | 레이청 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나. 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다. FY2024 선임계리사검증의견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라. 2024년 4분기 신규 승인 대체투자 건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마.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바. 2024년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사. 2024년 자금세탁방지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아. 2024년도 하반기 사규(규정) 제·개정 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4. 의결 안건[2] | | | | | | | | | |
| | 가.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제72기 (2024.1.1.~2024.12.31) 결산보고서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제72기 영업보고서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신규GA 제휴 승인 요청(동양생명금융서비스)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단,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각 이사는 본인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함.

1) 보고 안건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다) 최적가정,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

라) 2024년 4분기 신규대체투자 건에 대해 보고

마) 2024년 신용정보보호 업무수행 실적 및 2024년 계획에 대해 보고

바)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사) 2024 AML 제도이행 평가 결과 및 2025년 AML 업무 계획 보고

아) 2024년 하반기 사규 제·개정 및 폐지 현황 보고

2) 의결 안건

가) 2025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사전심의 및 승인

나) 2024년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 변경 승인

다) 2024년 영업보고서 변경 승인

라) 동양생명금융서비스와의 계열사 간 거래(신규GA 제휴) 승인

## 다) 2025년도 제3차 이사회 : 2025. 3. 31.(월) 13:45

〔안건 통지일 : 2025. 3. 28.〕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시예 저치앙 | 송민용 | 리쭝 위엔 | 레이청 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2024년도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회 평가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4. 의결 안건[2] | | | | | | | | | |
| | 가. 2025년 사업계획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5년 예산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개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및 관련 사규 제/개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정관 개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자본관리정책 개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 안건

가) 2024년도 이사회 평가 결과 보고

2) 의결 안건

가) 2025년 사업계획 및 2025년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승인

나) 2025년 편성예산 승인

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개정 승인

라) 책무구조도, 내부통제위원회 설립 및 운영 규정 제정, 지배구조/내부통제 관련 사규 개정 승인

마) 정관 개정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심의 및 승인

바) 자본관리정책 개정 승인

### 라) 2025년도 제4차 이사회 : 2025. 3. 31.(월) 15:40

### 〔안건 통지일 : 2025. 3. 28.〕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시예 저치앙 | 송민용 | 리쭝위엔 | 레이청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4. 의결 안건[1] | | | | | | | | | |
| | 가. 2025년도 이사회 의장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
|---|---|---|---|---|---|---|---|---|---|
| | 나. 대표이사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2025년도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 안건

가) 2025년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선임 승인

나) 대표이사 선임 승인

다) 2025년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

라) 2025년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

### 마) 2025년도 제5차 이사회 : 2025. 6. 11.(수) 11:15

### 〔안건 통지일 : 2025. 6. 8.〕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시예 저치앙 | 리쭝 위엔 | 레이청 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4. 의결 안건[1] | | | | | | | | |
| |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대표이사 후보 확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 안건

가) 2025년 7월 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사전심의 및 승인

나) 2025년 7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될 대표이사에 대한 후보 확정 승인

### 바) 2025년도 제6차 이사회 : 2025. 6. 26.(목) 14:00

### 〔안건 통지일 : 2025. 6. 25.〕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시예 저치앙 | 리쭝위 엔 | 레이청 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 | | | |
|---|---|---|---|---|---|---|---|---|
| 3. 보고 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
| | 가. 2025년 5월 누적 영업 및 유지율 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나. 2025년 1분기 KPI 달성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다. 2025년 1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인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4. 의결 안건[2] | | | | | | | | |
| | 가. 정관 개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 안건

가) 2025년 5월 누적 영업 및 유지율 현황 보고

나) 2025년 1분기 주요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고

다) 2025년 1분기 신규 승인 대체투자 건 보고

2) 의결 안건

가) 정관 개정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심의 및 승인

## 사) 2025년도 제7차 이사회 : 2025. 7. 1.(화) 15:00

## 〔안건 통지일 : 2025. 6. 28.〕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곽희필 | 양기현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의결 안건[1] | | | | | | | |
| | 가. 2025년도 이사회 의장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조직 변경의 건 승인 요청(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비등기임원 신규 선임의 건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자문위원운영 규정 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時 비용 분담 기준(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 | 제·개정 승인 요청 | | | | | | |
| | 자. 위험관리기준(정책) 및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차. 윤리규범 전면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정책 전면 개정(안) 및 컴플라이언스정책 폐지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 변경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하. ABL, 우리FIS 계열사간 거래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계약)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거.우리금융지주 편입에 따른 계열사 간 거래에 관한 이사회 승인 및 추가예산 편성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너. 우리금융편입에 따른 계열사간 거래 및 추가예산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더. 마케팅 업무위수탁 계약체결 보고 및 추가예산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러. 우리WON 인증서비스 이용계약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머. 그룹사간 거래 포괄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버. 그룹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서. 계열사거래 신용공여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허. 2025년도 내부통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 | 제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요청 | | | | | | |

1) 의결 안건

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승인

나) 2025년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다) 조직 신설, 폐쇄, 명칭 변경 및 통합/이동/분리 승인

라) 비등기임원 신규 선임 승인

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

바) 자문위원운영규정 제정 승인

사) 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시 비용 분담 기준 승인

아)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정 및 내부통제위원회규정 개정 승인

자) 위험관리기준(정책) 및 위험관리위원회규정 개정 승인

차) 윤리규범 전면 개정 승인

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개정 승인

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정책 전면 개정 및 컴플라이언스정책 폐지 승인

파) 임원의 변경 및 조직개편에 따른 책무구조도 변경 승인

하) 우리FIS와의 계열사 간 거래(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계약) 승인

거) 우리은행과의 계열사 간 거래(서비스표(브랜드)사용 계약, 고객 개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 제휴 계약 및 광고·마케팅 업무제휴 약정) 추가 예산 편성 승인

너) 우리FIS와의 계열사 간 거래(그룹포털서비스 사용 계약) 및 추가 예산 편성 승인

더) 우리은행과의 계열사 간 거래(마케팅 업무위수탁 계약) 및 추가 예산 편성 승인

러) 우리은행과의 계열사 간 거래(우리WON인증 서비스 이용계약) 승인

머) 우리금융지주 편입에 따른 우리금융지주 산하 계열사 간 기존 거래 포괄 승인

버) 그룹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정 승인

서) 우리금융지주 편입에 따른 우리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에 대한 기존 신용공여 포괄 승인

허) 2025년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아) 2025년도 제8차 이사회 : 2025. 7. 31.(목) 09:00

## 〔안건 통지일 : 2025. 7. 24.〕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곽희필 | 양기현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의결 안건[1] | | | | | | | |
| | 가.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계열사(우리은행) 간 고유자산 보관 위탁 계약 연장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 안건

가)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

나) 우리은행과의 계열사 간 거래(고유자산 보관 위탁 계약) 연장 승인

## 자) 2025년도 제9차 이사회 : 2025. 8. 28.(목) 16:00

## 〔안건 통지일 : 2025. 8. 21.〕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곽희필 | 양기현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의결 안건[1] | | | | | | | |
| |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조직 변경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책무구조도 변경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그룹 지속가능성 공시 시스템 구축 컨설팅 비용 분담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그룹 해외신용평가정보 공동 구매 계약 체결 및 추가 예산 편성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계열사(우리금융캐피탈) 간 임원 업무용 차량 신규 임차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 안건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전면 개정 승인

나)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승인

다) 실 상위 조직인 부문 신설 승인

라) 책무구조도 변경 승인

마) 그룹 지속가능성 공시 시스템 구축 컨설팅 비용 분담 승인

바) 그룹 해외신용평가정보 공동 구매 계약 체결 및 추가 예산 편성 승인

사) 우리금융캐피탈과의 계열사 간 거래(임원 업무용 차량 신규 임차) 승인

## 차) 2025년도 제10차 이사회 : 2025. 9. 16.(화) 09:00

〔안건 통지일 : 2025. 9. 9.〕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곽희필 | 양기현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의결 안건[1] | | | | | | | |
| | 가. 계열사(우리은행 등) 간 그룹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관련 계약 등 체결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 안건

가) 우리은행 등과의 계열사 간 거래(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관련 계약 등) 승인

## 카) 2025년도 제11차 이사회 : 2025. 10. 1.(수) 09:30

〔안건 통지일 : 2025. 9. 24.〕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곽희필 | 양기현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 | 가. 2025년 AML (자금세탁방지) 평가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나. 2025년 제1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다.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라. 자회사 ABA금융서비스 조직변경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4. 의결 안건[2] | | | | | | | |
| | 가. DCS(Data Center Service) 연장 사업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계열사(우리은행) 간 일중당좌대출 약정 체결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계열사(우리은행 등) 간 자산운용 관련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 | 거래 포괄 승인 | | | | | | |
| | 라. 채무조정 내부지침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2025년 RBA 기반 전사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승인 | 재논의 | 재논의 | 재논의 | 재논의 | 재논의 | 부결 |

1) 보고 안건

가) 2025년 자금세탁방지 평가 보고

나) 2025년 제1회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다)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라) 자회사 ABA금융서비스의 조직 변경 보고

2) 의결 안건

가) Data Center Service 계약 종료로 기존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연장 승인

나) 우리은행과의 계열사 간 거래(일중당좌대출 약정) 승인

다) 우리은행 등과의 계열사 간 거래(장외파생상품, 주식·채권 매매 등 자산운용 관련) 포괄 승인

라) 채무조정 내부지침 개정 승인

마) 금융소비자내부통제기준 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규정 제정 승인

바) 2025년 RBA기반 전사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승인

## 타) 2025년도 제12차 이사회 : 2025. 11. 6.(목) 15:30

## 〔안건 통지일 : 2025. 10. 3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곽희필 | 양기현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 | 가. 2025년 3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점검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4. 의결 안건[2] | | | | | | | |
| | 가. 이사회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2025년 자금세탁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 | 방지 내부통제체계 취약점 및 개선조치 사항 승인 | | | | | | |

1) 보고 안건

가) 2025년 3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점검 결과보고

2) 의결 안건

가) 이사회규정 개정 승인

나) 감사위원회규정 개정 승인

다)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규정 개정 승인

라) 2025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취약점 및 개선조치 사항 승인

## 파) 2025년도 제13차 이사회 : 2025. 12. 4.(목) 14:00

〔안건 통지일 : 2025. 11. 27.〕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곽희필 | 양기현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 | 가.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나. 2025년도 소송관리협의회 운영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4. 의결 안건[2] | | | | | | | |
| | 가. 그룹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비용 분담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5년 그룹 공동기부금 출연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계열사(우리은행) 간 서비스표 등에 관한 사용 계약 연장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계열사(우리은행) 간 마케팅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재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계열사 (우리은행) 간 우리WON 인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재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 | 바.계열사(우리은행 등) 간 자산운용 관련 거래 포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계열사(우리자산운용) 간 일반계정, 특별계정 원화 회사채 일임운용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아. 계열사(우리자산신탁 등) 간 임대차계약 체결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자. 2025년 안전 보건 활동 실적 보고 및 2026년 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차.이사회(내위원회) 및 사외이사 평가 기준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 안건

가)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나) 2025년도 소송관리협의회 운영현황 보고

2) 의결 안건

가) 그룹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비용 분담 승인

나) 2025년 그룹 공동기부금 출연 승인

다) 우리은행과의 계열사 간 거래(서비스표 사용계약 연장) 승인

라) 우리은행과의 계열사 간 거래(마케팅 업무 위수탁 계약) 재승인

마) 우리은행과의 계열사 간 거래(우리WON 인증서비스 이용계약) 재승인

바) 우리은행 등과의 계열사 간 거래(자산운용 관련 신규 거래 한도) 포괄 승인

사) 우리자산운용과의 계열사 간 거래(원화 회사채 일임운용) 승인

아) 우리자산신탁 및 동양생명금융서비스와의 계열사 간 거래(임대차 계약 연장 및 변경) 승인

자) 2025년 안전 보건 활동 실적 보고 및 2026년 계획 승인

차)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기준 승인

### 하) 2025년도 제14차 이사회 : 2025. 12. 23.(화) 10:00

### 〔안건 통지일 : 2025. 12. 16.〕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곽희필 | 양기현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의결 안건[1] | | | | | | | |
| | 가. 2026년 ABL생명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 | 보험 경영계획 승인 | | | | | | |
| | 나. 2026년 계열사 간 거래 포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계열사(우리은행 등) 간 『그룹데이터 플랫폼』 편입 관련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임원 운영 규정 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임면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책무구조도 변경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아. 2025년 6월말 기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 운영 체계·평가 결과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 안건

가) 2026년 경영계획 승인

나) 기존 계열사 간 거래 중 2026년 계약 갱신 등이 예정된 건 포괄 승인

다) 우리은행 등과의 계열사 간 거래(그룹데이터플랫폼 편입 관련) 승인

라) 임원 운영 규정 제정 승인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임면 승인

바) 책무구조도 변경 승인

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승인

아) 25년 6월말 기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 운영체계 및 평가 결과 승인

##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및 기준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5조 및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이사회 및 이사회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 전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에 관한 항목을 선정하고 전체 이사들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전까지 이사회에 평가결과 및 이에 대한 개선사항 및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주도하에 실시하며 세부적인 업무지원은 이사회 지원부서인 전략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의 평가자는 이사회 평가의 경우에는 이사 전원, 위원회 평가의 경우에는 소속 위원 전원입니다. 평가 부문은 크게 “구성”, “기능과 역할”, “운영”, “의사소통” 4개 부문으로, 평가 항목은 이사회 6개(19개 설문), 위원회별 각 7개(39개 설문), 이사회 평가제도 관련 항목 1개(2개 설문)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사회 평가점검 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사전 안건 제공 수준, 이사회 개최 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되고, 평가점수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이 항목별로 5등급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된 2025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하여 5점 만점에 모두 평균 4.9점 이상의 높은 등급을 획득하여 2025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들에 대한 특별 교육 및 설명(3월, 7월, 11월, 12월)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및 견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 중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정관 제32조 제3항).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달하고, 경영진에 대해 업무 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의장과 대등한 수준에서 사전 보고를 받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2025년 제4차 이사회에서 시예저치앙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이는 보험 및 경영분야에 이해가 깊은 시예저치앙 대표이사가 사내/사외이사 및 국내/해외이사 간 균형, 이사회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수행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당사는 2025년 제4차 이사회에서 통슈멍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통슈멍 사외이사가 경영관리 및 금융투자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한 회사 및 기관의 자문업무 등으로부터 축적한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이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2025년 7월 1일 당사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가 새롭게 선임되었고, 2025년 제7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제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26조, 제27조).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한함)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임원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2025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와 2명의 사외이사 후보, 1명의 감사위원 후보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와 3명의 사외이사 후보, 3명의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각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검증된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 1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6.6%로, 이는 각 위원이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의 사항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2025년 중 재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성명 | 상임/사외/<br>비상임/외부 | 직위 등 | 선임일 | 임기만료일 |
|---|---|---|---|---|
| 권혁준 | 사외이사 | 현)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25.7.1. | 2027.6.30. |
| 윤성만 | 사외이사 | 현)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25.7.1. | 2027.6.30. |
| 양기현 | 비상임이사 | 현)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25.7.1. | 2028.6.30. |

| | | | | |
|---|---|---|---|---|
| 레이청야오 | 사외이사 | 구)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021.4.1. | 2025.7.1. |
| 리쭝위엔 | 비상임이사 | 구)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21.11.23. | 2025.7.1. |
| 통슈멍 | 사외이사 | 구)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23.10.16. | 2025.7.1. |

주) 2025년 7월 1일 이사회 구성 변경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미개최로, 공시일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미선임.

## 다. 선임기준

### 1) 후보 자격요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한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 부서에 임원 예비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규 및 정관,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임원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군의 발굴 및 자격 검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 부의 등은 HR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HR본부의 임원 후보 선정 및 예비후보 관련 자료 제출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의 부의
- 예비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 및 임원 후보 추천 의결

###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평가 방법을 근거로 매년 1월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각 사외이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습니다. 2025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와 2명의 사외이사 후보, 1명의 감사위원 후보를, 2025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와 3명의 사외이사 후보, 3명의 감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당사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가) 2025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5. 3. 7.(금) 10:45

**[안건 통지일: 2025. 3. 5.]**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레이청야오 | 통슈멍 | 리쭝위엔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1]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통슈멍, 레이청야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나) 레이청야오 감사위원 후보 추천
다) 시예저치앙 대표이사 후보 추천

### 나) 2025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5. 6. 11.(수) 11:00

**[안건 통지일: 2025. 6. 8.]**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레이청야오 | 통슈멍 | 리쭝위엔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1]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김치중, 윤성만, 권혁준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나) 김치중, 윤성만, 권혁준 감사위원 후보 추천
다) 곽희필 대표이사 후보 추천

###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수준,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 1) 대표이사 후보

###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2025년 3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연임)**

(1) 성명: 시예저치앙

(2) 출생연도: 1967년

(3) 출신학교

남개대학 영문학 학사

영국특허보험학원 보험 특허인

챵장상업학원 공상관리 석사

(4) 경력

전 중국보험 영국 유한회사, 재보험파트 매니저

중국재보험회사, 국내재보험파트/특수리스크파트 파트장

Lloyd’s 북경 대표처, 수석대표

Lloyd’s 재보험 중국 유한회사, 부총경리

미국신리보험 중국 유한회사, 이사 총경리

대서양재보험회사, 북아시아총경리

**② 2025년 6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1) 성명: 곽희필

(2) 출생연도: 1966년

(3) 출신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4) 경력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이사

신한라이프 FC1사업그룹 부사장

오렌지라이프 영업채널본부 부사장, FC채널본부 부사장

ING생명보험 FC채널본부 부사장, 영업추진부문장

##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레이청야오(위원장):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교수

-. 리쭝위엔: 다자보험그룹 해외업무 총괄

-. 통슈멍: 동방창업투자유한회사 이사장

(2) 후보자와의 관계 : 없음

##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① 2025년 3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연임)**

후보자 시예저치앙은 30년 이상 금융, 보험업에 종사한 자로서 금융회사의 업적 신장과 리스크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고, 재보험,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Global 금융회사의 수석대표 등을 역임하여 금융회사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나 규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 및 다양한 업무경험, 노하우,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보험시장 내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보험시장 내에서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성 있는 회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2025년 6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후보자 곽희필은 약 30년간 보험 및 재무영업 부문에서 경영을 총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FC채널 및 영업조직을 총괄한 부사장과 GA부문 대표이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영업, 채널전략, 조직성과관리 등 실질적 경영 리더십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전사 전략 실행과 경영성과 창출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① 2025년 3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연임)

후보 추천 당시 당사의 대주주인 다자보험그룹은 후보자의 경력과 회사 운용의 전문성 및 역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 대표이사로 선임 시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② 2025년 6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자회사 ABL생명 대표이사 후보군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고, 내외부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역량검증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후보 확정하였으며, 2025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계법규와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2025년 3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1) 소극적 요건

후보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한 임원의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후보자는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제시하는 임원후보의 자격, 최고경영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합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은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 본인 소명

후보자는 지배구조법령에서 제시하는 임원자격심사표에 따른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2025년 6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1) 소극적 요건

후보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한 임원의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후보자는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제시하는 임원후보의 자격, 최고경영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합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은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 본인 소명

후보자는 지배구조법령에서 제시하는 임원자격심사표에 따른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 ① 2025년 3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연임)

시예저치앙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 추천을 위해 2025년 3월 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대응 능력, 회사의 비전에 대한 이해가 당사의 건전 경영 및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예저치앙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② 2025년 6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곽희필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 추천을 위해 2025년 6월 11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득적 요건 및 금융관련 전문성 등 적극적 요건에 대한 자격 검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대표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곽희필 후보가 보험 및 재무영업 부문에서 경영을 총괄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리더십 및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곽희필 후보자를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2) 대표집행임원 후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추천하여, 대표집행임원 후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감사위원 후보

### 가) 후보자 인적사항

#### ① 2025년 3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1) 성명: 레이청야오

(2) 출생연도: 1971년

(3) 출신학교: 중국 인민대학교 지역경제과 학사
중국 인민대학교 무역경제학 경제학 석사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 금융학 박사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금융 회계 방문학자

(4) 경력: China Great Wall industry본사 당조 서기 비서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강사, 부교수, 교수

#### ② 2025년 6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1) 성명 :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

(2) 출생연도 : 김치중 - 1952년 권혁준 - 1974년 윤성만 - 1973년

(3) 출신학교

| 성명 | 출신학교 |
|---|---|
| 김치중 | 숭전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 학사,<br>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경영학 석사 |
| 권혁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U.S.A) 경영학과 학사<br>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정보시스템 박사 |
| 윤성만 | 육군사관학교 관리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br>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

(4) 경력

| 성명 | 일반경력 |
|---|---|
| 김치중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손해보험협회 부회장<br>보험연수원 원장, 성균관대 및 국민대 겸임교수 |
| 권혁준 | 손해보험협회 자문교수, 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br>보험개발원 자문교수,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
| 윤성만 | 선문대학교 조교수, 한국세무학회 회장 |

| | |
|---|---|
| |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 교수 |

##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레이청야오(위원장):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교수

-. 리쭝위엔: 다자보험그룹 해외업무 총괄

-. 통슈멍: 동방창업투자유한회사 이사장

(2) 후보자와의 관계 : 없음

##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① 2025년 3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1) 후보 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레이청야오는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지역경제과 학사, 무역경제학 석사, 재정금융학 박사를 취득하며 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강사, 부교수, 교수를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제 및 국내 경제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후보자 레이청야오는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근거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 ② 2025년 6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1) 후보 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김치중은 숭전대학교 경상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여 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보험연수원 원장, 성균관대 및 국민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제 및 국내 경제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권혁준은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U.S.A)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및 정보시스템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블록체인 자문교수 및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로 위촉되어 있는 금융전문가로 다양한 경력과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윤성만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및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를 취득하여 경제 및 재무 전반에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실무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① 2025년 3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1) 소극적 요건**

후보자 레이청야오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한 임원의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후보자 레이청야오는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함과 더불어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의 실무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후보자 레이청야오는 지배구조법령에서 제시하는 임원자격심사표에 따른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2025년 6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1) 소극적 요건**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은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한 임원의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은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함과 더불어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의 실무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은 지배구조법령에서 제시하는 임원자격심사표에 따른

제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 ① 2025년 3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후보자 레이청야오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5년 3월 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각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② 2025년 6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5년 6월 11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각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4) 사외이사 후보

### 가) 후보자 인적사항

#### ① 2025년 3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1) 성명 : 통슈멍, 레이청야오

(2) 출생연도 : 통슈멍 - 1972년  레이청야오 - 1971년

(3) 출신학교

| 성명 | 출신학교 |
|---|---|
| 통슈멍 | 동북사범대학 중국고전문학 학사,<br>베이징대학교광화관리학원 공상관리학 석사 |
| 레이청야오 | 중국 인민대학교 지역경제과 학사<br>중국 인민대학교 무역경제학 경제학 석사<br>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 금융학 박사<br>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금융 회계 방문학자 |

(4) 경력 및 사외이사 경력

| 성명 | 일반경력 | 타 금융회사<br>사외이사 경력 |
|---|---|---|
| 통슈멍 | 베이징레인보우공익기금 설립자, 이사<br>베이징동방바이다투자유한회사 이사장<br>동방문창투자유한회사 이사장<br>중해국제안보회사 이사장<br>우하이궈쉬안에너지유한회사 이사장 | 해당없음 |
| 레이청야오 | China Great Wall industry본사 당조서기 비서<br>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강사, 부교수, 교수 | 해당없음 |

**② 2025년 6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1) 성명 :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

(2) 출생연도 : 김치중 - 1952년  권혁준 - 1974년  윤성만 - 1973년

(3) 출신학교

| 성명 | 출신학교 |
|---|---|
| 김치중 | 숭전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 학사,<br>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경영학 석사 |
| 권혁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U.S.A) 경영학과 학사<br>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정보시스템 박사 |
| 윤성만 | 육군사관학교 관리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br>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

(4) 경력 및 사외이사 경력

| 성명 | 일반경력 | 타 금융회사<br>사외이사 경력 |
|---|---|---|
| 김치중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br>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보험연수원 원장<br>성균관대 및 국민대 겸임교수 | KB생명보험,<br>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메트라이프 |

| | | |
|---|---|---|
| | | 금융서비스 |
| 권혁준 | 손해보험협회 자문교수, 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br>보험개발원 자문교수<br>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 해당없음 |
| 윤성만 | 선문대학교 조교수, 한국세무학회 회장<br>한국회계학회 부회장<br>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 교수 | 해당없음 |

###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레이청야오(위원장):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교수

-. 리쭝위엔: 다자보험그룹 해외업무 총괄

-. 통슈멍: 동방창업투자유한회사 이사장

(2) 후보자와의 관계 : 없음

###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통슈멍은 동북사범대학 중국고전문학 학사,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학원 공상관리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베이징레인보우 공익기금 설립자이며, 베이징 동방바이다투자유한회사, 동방문창투자유한회사, 중해국제안보회사, 우하이궈쉬안에너지유안회사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등 국제 경제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하였습니다.

후보자 레이청야오는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지역경제과 학사, 무역경제학 석사, 재정금융학 박사를 취득하며 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강사, 부교수, 교수를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제 및 국내 경제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하였습니다.

#### (2) 후보자 추천경로

후보자 통슈멍, 레이청야오는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근거로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② 2025년 6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김치중은 숭전대학교 경상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여 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보험연수원 원장, 성균관대 및 국민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제 및 국내 경제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권혁준은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U.S.A)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및 정보시스템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블록체인 자문교수 및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로 위촉되어 있는 금융전문가로 다양한 경력과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윤성만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및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를 취득하여 경제 및 재무 전반에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실무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은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근거로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 2025년 3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1) 소극적 요건

①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② 평가

후보자 통슈멍, 레이청야오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통슈멍, 레이청야오는 동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3항은 사외이사(후보자)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통슈멍, 레이청야오는 국내외 유수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또는 기업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의해 대상자의 공정성과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역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요건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통슈멍, 레이청야오는 교수 및 이사장 등을 겸직하고 있으나 직위 및 업무를 고려할 때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객관적인 업무처리 및 공정하게 직무수행하여 직무공정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윤리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통슈멍, 레이청야오는 금융산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어 윤리성, 책임성 모두 충족됩니다.

㉲ 충실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충실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통슈멍, 레이청야오는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석하고 해당 의안을 사전 검토 하는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연간 약 80~100여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각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본인 소명**

후보자 통슈멍, 레이청야오는 지배구조법령에서 제시하는 임원자격심사표에 따른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① 2025년 6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1) 소극적 요건**

①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② 평가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은 동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3항은 사외이사(후보자)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은 국내 유수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또는 기업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의해 대상자의 공정성과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역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요건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은 교수 등을 겸직하고 있으나 직위 및 업무를 고려할 때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객관적인 업무처리 및 공정하게 직무수행하여 직무공정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윤리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은 금융산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어 윤리성, 책임성 모두 충족됩니다.

㉱ 충실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충실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은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석하고 해당 의안을 사전 검토 하는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연간 약 80~100여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각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본인 소명**

후보자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은 지배구조법령에서 제시하는 임원자격심사표에 따른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① 2025년 3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통슈멍, 레이청야오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2025년 3월 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자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

성으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② 2025년 6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김치중, 권혁준, 윤성만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2025년 6월 11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자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25년 3월 31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레이청야오, 통슈멍 총 2명이며, 각 1년씩 재임되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편입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임기 만료) 또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인 2026년 3월 20일에 임기가 도래하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사외이사명 | 재임기간 | 연임여부 | 이사회등 출석률 | 평가 여부 |
|---|---|---|---|---|
| 레이청야오 | 2021.4.1~ 2025.7.1 | 해당 | 100% | 적합 |
| 통슈멍 | 2023.10.16~ 2025.7.1 | 해당 | 93% | 적합 |

###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레이청야오 사외이사는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직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등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슈멍 사외이사는 당사 선임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임사외이사로서 경영관리 및 금융투자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한 회사 및 기관의 자문업무 등으로부터 축적한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이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통슈멍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등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주주 등으로부터 사외이사의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외부자문기관과 주주로부터 또한 사외이사, 사내 임직원의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윤리적 자격 요건을 갖춘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후보군 현황

당사는 주주 등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고 있으며,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해 자격검증을 거친 사외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025년 중에는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은 없었으나, 관련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로서 인사팀을 두고 있으며 직원 수는 총 6명입니다. 주주 등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가 추천되면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 등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추천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팀장(총괄) 1명, 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1명, 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 지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시사항 정리 및 보고,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실무 지원 업무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해당사항 없음.**

##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 가) 이사회

**(가)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 2025. 2. 14.(금) 10:45**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레이청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 가. 제72기 결산보고서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제72기 영업보고서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나) 2025년도 제2차 이사회 : 2025. 3. 14.(금) 14:0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레이청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가. 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나. 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다. FY2024 선임계리사검증의견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라. 2024년 4분기 신규 승인 대체투자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 | 건 | |
| | 마.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바. 2024년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사. 2024년 자금세탁방지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아. 2024년도 하반기 사규(규정) 제·개정 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4. 의결 안건 | | |

| | | | | | | |
|---|---|---|---|---|---|---|
| | 가.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제72기 결산보고서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제72기 영업보고서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신규GA 제휴 승인 요청(동양생명금융서비스)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2025년도 제3차 이사회 : 2025. 3. 31.(월) 13:45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레이청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가. 2024년도 이사회 평가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 가. 2025년 사업계획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5년 예산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 개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 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및 관련 사규 제/개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정관 개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자본관리정책 개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25년도 제4차 이사회 : 2025. 3. 31.(월) 15:4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레이청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 가. 2025년도 이사회 의장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대표이사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2025년도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단,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각 이사는 본인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함.

## (마) 2025년도 제5차 이사회 : 2025. 6. 11.(수) 11:15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레이청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 |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대표이사 후보 확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2025년도 제6차 정기이사회 : 2025. 6. 26.(목) 14:0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레이청야오 | 통슈멍 | 이장영 | 김종열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가. 2025년 5월 누적 영업 및 유지율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나. 2025년 1분기 KPI 달성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다. 2025년 1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인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 가. 정관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사) 2025년도 제7차 이사회 : 2025. 7. 1.(화) 15:0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가. 2025년도 이사회 의장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조직 변경의 건 승인 요청(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비등기임원 신규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선임의 건 승인 요청 | | | | |
| | 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자문위원운영규정 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時 비용 분담 기준(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제·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자. 위험관리기준(정책) 및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차. 윤리규범 전면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개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정책 전면 개정(안) 및 컴플라이언스정책 폐지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 변경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하. ABL, 우리FIS 계열사간 거래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계약)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거.우리금융지주 편입에 따른 계열사간 거래에 관한 이사회 승인 및 추가예산 편성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너. 우리금융편입에 따른 계열사간 거래 및 추가예산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더. 마케팅 업무위수탁 계약체결 보고 및 추가예산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러. 우리WON 인증서비스 이용계약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머. 그룹사간 거래 포괄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버. 그룹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서. 계열사거래 신용공여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허. 2025년도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단,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각 이사는 본인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함.

### (아) 2025년도 제8차 이사회 : 2025. 7. 31.(목) 09:0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가.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계열사(우리은행) 간 고유자산 보관 위탁 계약 연장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자) 2025년도 제9차 이사회 : 2025. 8. 28.(목) 16:0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나.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조직 변경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책무구조도 변경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그룹 지속가능성 공시 시스템 구축 컨설팅 비용 분담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그룹 해외신용평가정보 공동 구매 계약 체결 및 추가 예산 편성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계열사(우리금융캐피탈) 간 임원 업무용차량 신규 임차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차) 2025년도 제10차 이사회 : 2025. 9. 16.(화) 09:0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가. 계열사(우리은행 등) 간 그룹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관련 계약 등 체결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카) 2025년도 제11차 이사회 : 2025. 10. 1.(수) 09:3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년 AML (자금세탁방지) 평가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
|---|---|---|---|---|---|
| | 나. 2025년 제1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자회사 ABA금융서비스 조직변경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가. DCS(Data Center Service) 연장 사업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계열사(우리은행) 간 일중당좌대출 약정 체결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계열사(우리은행 등) 간 자산운용 관련 거래 포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채무조정 내부지침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2025년 RBA 기반 전사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승인 | 재논의 | 재논의 | 재논의 | 부결 |

## (타) 2025년도 제12차 이사회 : 2025. 11. 6.(목) 15:3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년 3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점검 결과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가. 이사회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금융소비자보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내부통제기준규정 개정 승인 | | | | |
| | 라. 2025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취약점 및 개선조치 사항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파) 2025년도 제13차 이사회 : 2025. 12. 4.(목) 14:0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2025년도 소송관리협의회 운영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가. 그룹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비용 분담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5년 그룹 공동기부금 출연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계열사(우리은행) 간 서비스표 등에 관한 사용 계약 연장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계열사(우리은행) 간 마케팅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재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계열사 (우리은행) 간 우리WON 인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재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계열사(우리은행 등) 간 자산운용 관련 거래 포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계열사(우리자산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운용) 간 일반계정, 특별계정 원화 회사채 일임운용 거래 승인 | | | | |
| | 아. 계열사(우리자산신탁 등) 간 임대차 계약 체결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자. 2025년 안전 보건 활동 실적 보고 및 2026년 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차.이사회(내위원회) 및 사외이사 평가 기준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하) 2025년도 제14차 이사회 : 2025. 12. 23.(화) 10:00

| 항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가. 2026년 ABL생명보험 경영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6년 계열사 간 거래 포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계열사(우리은행 등) 간 『그룹데이터 플랫폼』편입 관련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임원 운영 규정 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임면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책무구조도 변경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아. 2025년 6월말 기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 운영체계·평가 결과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가) 2025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3. 7.(금) 10:45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레이청야오 | 통슈멍 | |
| 2. 참석여부 |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4. 의결안건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5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6. 11.(수) 11:0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 레이청야오 | 통슈멍 | |
| 2. 참석여부 |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4. 의결안건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감사위원회

### (가) 2025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5. 3. 14.(금) 09:30

| 항목 | 이사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이장영 | 레이청야오 | 김종열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 |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제72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외부감사인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Compliance 활동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마. FY2024 결산감사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사. 내부감사 활동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 | 가. FY2024 결산승인 (제72기)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제72기 영업보고서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2025년 연간 감사계획(안)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5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5. 3. 31.(금) 13:30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이장영 | 레이청야오 | 김종열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심의안건 | | | | | |
| |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사규 개정 심의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2025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5. 6. 26.(목) 15:00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이장영 | 레이청야오 | 김종열 | |

| | | | |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내부감사 활동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 | 가.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의건 | 의결권 없음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외부감사인의 비감사계약 사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25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5. 7. 1.(화) 17:50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 | 가.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의건 | 의결권 없음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내부감사규정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2025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5. 7. 31.(목) 10:00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내부감사관련 지침 개정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
|---|---|---|---|---|---|
| | 보고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가.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장 임면 동의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2025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5. 8. 28.(목) 15:30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의결안건 | | | | | |
| |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사) 2025년 제7차 감사위원회 : 2025. 10. 1.(수) 13:30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년 2Q 내부통제 업무 수행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제73기 재무제표 감사계획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2025년 AML (자금세탁방지) 평가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내부감사활동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 | 가. FY2025~2027 변액펀드 외부회계 감사인 선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5년 내부감사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아) 2025년 제8차 감사위원회 : 2025. 11. 6.(목) 09:30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심의안건 | | | | | |
| | 가.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자) 2025년 제9차 감사위원회 : 2025. 12. 2.(화) 09:00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전산감사지침 폐지 및 감사업무지침 개정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부실채권심의지침 제정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내부감사활동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 | 가.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감사정책 폐지 및 감사업무규정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차) 2025년 제10차 감사위원회 : 2025. 12. 23.(화) 09:00

| 항목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결의안건 | | | | | |
| | 가. 감사보조조직의 장 임면 동의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5.심의안건 | | | | | |
| | 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심의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위험관리위원회

### (가) 2025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3. 14.(금) 16:3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종열 | 이장영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가. 2024년 4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나. 2024년 상품개발현황 및 2025년 신상품 개발 계획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다. 2024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 승인건 사전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라. K-ICS 문서화 운영 이행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마. 2025년 주요위험평가체계 및 관리방안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바. 2024년 4분기 Risk Dashboard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4. 의결안건 | | | | |
| | 가.2025년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2025년도 투자위험한도 설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5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3. 31.(월) 16:20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종열 | 이장영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

| | | | | |
|---|---|---|---|---|
| 3. 보고안건 | | 보고안건 없음 | | |
| 4. 의결안건 | | | | |
| | 가. 2024년말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의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2025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5. 21.(수) 14:0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종열 | 이장영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보고안건 없음 | | |
| 4. 의결안건 | | | | |
| | 가.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요청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5년 파생상품 전략 변경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25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6. 26.(목) 15:15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종열 | 이장영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가. 2025년 1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나. 2024년 4분기 통합 위기상황(자체 시나리오) 분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다. 2025년 1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라. 2024년 4분기 내부모형 산출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마. 2025년 1분기 Risk Dashboard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4. 의결안건 | | 의결안건 없음 | | |

## (마) 2025년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7. 1.(화) 18:00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가결 |
|---|---|---|

| | | | | | 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성만 | 김치중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 | 가.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위험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위험관리규정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2025년도 제6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8. 28.(목) 13:0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성만 | 김치중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년 상반기 상품개발현황 및 하반기 상품 개발 계획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2025년 2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2025년 2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보험 자회사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마. 2025년 2분기 Risk Dashboard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바. 2025년 2분기 기타 위험관리 모니터링 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의결안건 없음 | | | |

## (사) 2025년도 제7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10. 1.(수) 15:0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성만 | 김치중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년도 2분기 자체 위기상황시나리오 분석 결과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
|---|---|---|---|---|---|
| | 나. 2025년 7월 기준 미국 국채선도 한도 근접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 | 가.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PF) 예외평가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지주 편입에 따른 위험관리 관련 규정 폐지 및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아) 2025년도 제8차 위험관리위원회 2025. 12. 2.(화) 10:0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성만 | 김치중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년 손해율악화 원인 및 관리방안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2025년 3분기 K-ICS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2025년 3분기 RiskDashboard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2025년 사업연속성관리체계 운영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 | 가. 2026년도 파생상품 운용전략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6년 적용이율(보장계약), 최저보증이율 및 확정금리저축성보험 적립이율 적용수준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2026년 위험관리전략(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2026년 위기대응체계수립(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위험관리규정개정(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2026년 유동성리스크관리방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2025년 K-ICS 운영위험액 한도 증액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자) 2025년도 제9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12. 23.(화) 09:3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성만 | 김치중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 | 가.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변경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6년 위험성향 및 내부자본 한도 설정(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2026년 투자위험한도 설정(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2026년 주요위험평가대상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보수위원회

### (가) 2025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5. 3. 7.(금) 10:3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통슈멍 | 레이청야오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4. 의결안건 | | | | |
| | 가. 2024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5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2025. 3. 31.(월) 13:0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통슈멍 | 레이청야오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4. 의결 안건 | | | | |
| | 가. 2024년도 성과평가 및 2025년도 성과목표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나. 2025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제도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2025년도 임원 보수 총액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2024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다) 2025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 2025. 4. 14.(월) 10:3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통슈멍 | 레이청야오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4. 의결 안건 | | | | |
| | 가.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4년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라) 2025년도 제4차 보수위원회 : 2025. 6. 26.(목) 13:45**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통슈멍 | 레이청야오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4. 의결 안건 | | | | |
| | 가. 임원 퇴직금규정 개정 | 찬성 | 찬성 | 가결 |

**(마) 2025년도 제5차 보수위원회 : 2025. 8. 28.(목) 17:30**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4. 의결 안건 | | | |

| | | | | |
|---|---|---|---|---|
| | 가.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5년 하반기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임원 성과보수체계 변경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임원 보수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2025년도 제6차 보수위원회 : 2025. 12. 23.(화) 12:3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4. 의결 안건 | | | | |
| | 가. 특별퇴직금 지급(안)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임원 성과보수체계 변경(안) 승인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내부통제위원회

### (가) 2025년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 2025. 7. 1.(화) 17:3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권혁준 | 김치중 | 곽희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 | 가. 내부통제 기준 운영규정 전면 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5년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 : 2025. 11. 6.(목) 09:00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권혁준 | 김치중 | 곽희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 안건 | | | | | |
| |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 가) 사외이사 김치중

사외이사 김치중은 2025년 7월 1일 선임된 이후 개최된 2025년 이사회 8회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7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내부통제위원회 2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치중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6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다양한 안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사회 운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간담회 및 사외이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나) 사외이사 윤성만

사외이사 윤성만은 2025년 7월 1일 선임된 이후 개최된 2025년 이사회 8회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7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보수위원회 2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윤성만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6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의장으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 제시 등 이사회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간담회 및 사외이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다) 사외이사 권혁준

사외이사 권혁준은 2025년 7월 1일 선임된 이후 개최된 2025년 이사회 8회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7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보수위원회 2회, 내부통제위원회 2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권혁준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64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으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 제시 등 이사회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간담회 및 사외이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라) 사외이사 레이청야오

사외이사 레이청야오는 2025년 7월 1일 퇴임 이전 개최된 2025년 이사회 6회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3회, 보수위원회 4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참석하였습

니다. 사외이사 레이청야오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4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금융, 경제 전문가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 제시 등 이사회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간담회 및 사외이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마) 사외이사 이장영

사외이사 이장영은 2025년 7월 1일 퇴임 이전 개최된 2025년 이사회 6회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3회, 위험관리위원회 4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장영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38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금융, 경제 전문가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 제시 등 이사회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간담회 및 사외이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바) 사외이사 김종열

사외이사 김종열은 2025년 7월 1일 퇴임 이전 개최된 2025년 이사회 6회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3회, 위험관리위원회 4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종열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38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험 및 계리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 제시 등 이사회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간담회 및 사외이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사) 사외이사 통슈멍

사외이사 통슈멍은 2025년 7월 1일 퇴임 이전 개최된 2025년 이사회 6회 참석하였고, 보수위원회 4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통슈멍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36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 제시 등 이사회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간담회 및 사외이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아) 요약

| 구분 / 사외이사명 | 이사회 | | | 이사회내 위원회 | | | | | | | | | | | | | | | 활동 시간 |
|---|---|---|---|---|---|---|---|---|---|---|---|---|---|---|---|---|---|---|---|
| | | | | 감사 위원회 | | | 위험관리 위원회 | | | 보수 위원회 |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 | 내부통제 위원회 | | | |
| | 개최 | 참여 | 찬성 | 개최 | 참여 | 찬성 | 개최 | 참여 | 찬성 | 개최 | 참여 | 찬성 | 개최 | 참여 | 찬성 | 개최 | 참여 | 찬성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김치중 | 8 | 8 | 59 | 7 | 7 | 12 | 5 | 5 | 15 | - | - | - | - | - | - | 2 | 2 | 3 | 60 |
| 윤성만 | 8 | 8 | 59 | 7 | 7 | 12 | 5 | 5 | 15 | 2 | 2 | 6 | - | - | - | - | - | - | 60 |
| 권혁준 | 8 | 8 | 59 | 7 | 7 | 12 | 5 | 5 | 15 | 2 | 2 | 6 | - | - | - | 2 | 2 | 3 | 64 |
| 레이청야오 | 6 | 6 | 20 | 3 | 3 | 6 | - | - | - | 4 | 4 | 8 | 2 | 2 | 6 | - | - | - | 42 |
| 이장영 | 6 | 6 | 20 | 3 | 3 | 6 | 4 | 4 | 5 | - | - | - | - | - | - | - | - | - | 38 |
| 김종열 | 6 | 6 | 20 | 3 | 3 | 6 | 4 | 4 | 5 | - | - | - | - | - | - | - | - | - | 38 |
| 통슈멍 | 6 | 6 | 20 | - | - | - | - | - | - | 4 | 4 | 8 | 2 | 2 | 6 | - | - | - | 36 |

##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현황

당사의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금융그룹 및 소속 임원(자회사 포함)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우리금융그룹 및 소속 임원(자회사 포함)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및 위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각 보상하며, 총 보상한도는 연간 500억원입니다.

##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 사외이사 성명 | | 레이청야오 | 이장영 | 김종열 | 통슈멍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 | | | | | | | |
|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 -2025년 3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사업계획 | | | | | | |
| |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 -2025년 7월: 개정상법의 주요내용과 대응 | | | | | | |
| |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 -2025년 11월: 자금세탁방지 교육 | | | | | | |
| |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 -2025년 12월: 2026년 사업계획 | | | | | | |

| | | | | | | | | |
|---|---|---|---|---|---|---|---|---|
| |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 2. 누적 교육 시간 | | 2 | 2 | 2 | 2 | 5 | 5 | 5 |

##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1) 사외이사 레이청야오

### 가) 소극적 자격요건

①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② 평가

레이청야오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선임되었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3항은 사외이사(후보자)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레이청야오 사외이사는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교수로 재직 중으로 금융전반에 걸쳐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문성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의해 대상자의 공정성과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역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요건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레이청야오 사외이사는 교수로의 직위 및 업무를 고려할 때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객관적인 업무처리 및 공정하게 직무수행하여 직무공정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윤리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레이청야오 사외이사는 금융산업과 관련된 지속

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어 윤리성, 책임성 모두 충족됩니다.

④ 충실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충실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레이청야오 사외이사는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석하고 해당 의안을 사전 검토 하는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연간 약 80~100여시간 정도를 소요하여 충실하게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습니다.

### 다) 요약

| 심사항목 | | 충족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자격요건 | | | |
| |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
| |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2. 적극적 자격요건 | | | |
| | 가. 전문성 | 충족 | 금융, 자산운용전문가 |
| | 나. 직무공정성 | 충족 | 공정하게 직무 수행 |
| | 다. 윤리책임성 | 충족 |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
| | 라. 충실성 | 충족 |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

## 2) 사외이사 이장영

### 가) 소극적 자격요건

①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② 평가

이장영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선임되었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3항은 사외이사(후보자)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

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장영 사외이사는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역임으로 금융전반에 걸쳐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문성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의해 대상자의 공정성과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역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요건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장영 사외이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직위 및 업무를 고려할 때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객관적인 업무처리 및 공정하게 직무수행하여 직무공정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윤리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장영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IMF 등 기관에서의 직무경험으로 높은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어 윤리성, 책임성 모두 충족됩니다.

④ 충실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충실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장영 사외이사는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석하고 해당 의안을 사전 검토 하는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연간 약 80~100여시간 정도를 소요하여 충실하게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습니다.

### 다) 요약

| 심사항목 | 충족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자격요건 | | |
|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
|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2. 적극적 자격요건 | | |

| | | |
|---|---|---|
| 가. 전문성 | 충족 | 금융, 경제 전문가 |
| 나. 직무공정성 | 충족 | 공정하게 직무 수행 |
| 다. 윤리책임성 | 충족 |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
| 라. 충실성 | 충족 |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

### 3) 사외이사 김종열

### 가) 소극적 자격요건

①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② 평가

김종열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선임되었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3항은 사외이사(후보자)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열 사외이사는 A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 하나HSBC 등 다양한 보험회사에서 경험을 가진 계리 전문가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문성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의해 대상자의 공정성과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역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요건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종열 사외이사는 숭실대 교수직 직위 및 업무를 고려할 때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객관적인 업무처리 및 공정하게 직무수행하여 직무공정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윤리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열 사외이사는 다양한 보험회사에서의 직무경험으로 높은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계리분야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적극

적으로 개진하고 있어 윤리성, 책임성 모두 충족됩니다.

④ 충실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충실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열 사외이사는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석하고 해당 의안을 사전 검토 하는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연간 약 80~100여시간 정도를 소요하여 충실하게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습니다.

### 다) 요약

| 심사항목 | 충족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자격요건 | | |
|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
|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2. 적극적 자격요건 | | |
| 가. 전문성 | 충족 | 보험, 계리 전문가 |
| 나. 직무공정성 | 충족 | 공정하게 직무 수행 |
| 다. 윤리책임성 | 충족 |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
| 라. 충실성 | 충족 |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

## 4) 사외이사 통슈멍

### 가) 소극적 자격요건

①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② 평가

통슈멍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선임되었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3항은 사외이사(후보자)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슈멍 사외이사는 우하이궈쉬안에너지유한회사 이사장, 동방문창투자유한회사 이사장 등 다양한 회사에서 경험을 가진 금융 및 자산운용 전문가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문성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의해 대상자의 공정성과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역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요건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통슈멍 사외이사의 이사장 등의 직위 및 업무를 고려할 때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객관적인 업무처리 및 공정하게 직무수행하여 직무공정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윤리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슈멍 사외이사는 다양한 회사에서의 직무경험으로 높은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자산운용의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어 윤리성, 책임성 모두 충족됩니다.

④ 충실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충실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슈멍 사외이사는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석하고 해당 의안을 사전 검토 하는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연간 약 80~100여시간 정도를 소요하여 충실하게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습니다.

### 다) 요약

| 심사항목 | 충족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자격요건 | | |
|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
|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2. 적극적 자격요건 | | |
| 가. 전문성 | 충족 | 금융, 자산운용 전문가 |

| | | | |
|---|---|---|---|
| | 나. 직무공정성 | 충족 | 공정하게 직무 수행 |
| | 다. 윤리책임성 | 충족 |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
| | 라. 충실성 | 충족 |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

##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바. 사외이사 평가

###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이해도, 독립성 등에 대해 매년 1회 사외이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내부평가

###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년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 본인과 이사회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 사외이사별로 역량 및 전문성(금융산업 이해도, 전문 분야별 맞춤형 질문), 직무 공정성 및 윤리 책임성(공정한 직무수행, 주주 및 고객 이익 제고), 회사 발전 기여도(경영 조언, 새로운 관점 제시), 이사의 역할(화사 통합 관리), 의사 소통 능력(합리적 근거제시, 의견경청), 회사이해도(단기, 중장기 경영 전략 이해), 충실성(사외이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평가 절차 : 매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에게 평가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평가서 항목에 대한 서면평가를 요청하여 실시합니다.

###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1) 총론

2025년도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 본인평가, 동료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12월 말 기준 재임중인 3명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 역량 및 전문성, 기여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력 및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2026년 1월 실시)

| 사외이사 | 평가결과 | | | | | | | 개선방안 |
|---|---|---|---|---|---|---|---|---|
| | 역량 및 전문성 | 직무 공정성 및 윤리 책임성 | 회사 발전 기여도 | 이사의 역할 | 의사 소통 능력 | 회사 이해도 | 충실성 | |
| 김치중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 |
| 윤성만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 |
| 권혁준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탁월 | - |

※ 4.5점 이상 탁월, 4점 이상 우수, 3.5점 이상 보통, 3.5점 미만 미흡

### 3) 외부평가

#### 가) 외부평가 개요

당사는 향후 공정한 평가기관 선정 절차를 통하여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한 뒤 평가제도에 대한 자문 위탁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해당사항 없음.

##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2023년 10월 16일자로 통슈멍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최초 선임하였으며 2025년 4월 1일에 연임되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달하고,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달하고,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통슈멍 사외이사는 2025년 7월 1일자로 사임하였고 이후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부서명 : 인사팀, 전략기획팀(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업무에 한함)
- 직원수 : 총 17명

- 팀장(총괄) 2명, 부장 3명, 차장 6명(변호사 1명 포함), 과장 2명, 사원 4명
- 지원내용 :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교육지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 등

##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1) 사외이사 김치중

가) 재직기간 : 2025.7.1.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목 |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 26,900,000원 | |
| | 기본금 | 21,000,000원 | 월 3,500,000원 x 6개월 |
| | 상여금 | - | |
| | 기타 수당 | 3,000,000원 | 이사회 의장(직책수당)<br>월 500,000원 x 6개월 |
| | | 2,900,000원 | 이사회(산하위원회) 미팅수당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2) 사외이사 윤성만

가) 재직기간 : 2025.7.1.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목 |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 23,900,000원 | |
| | 기본금 | 21,000,000원 | 월 3,500,000원 x 6개월 |
| | 상여금 | | |
| | 기타 수당 | 2,900,000원 | 이사회(산하위원회) 미팅수당 |
| | | |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3) 사외이사 권혁준

가) 재직기간 : 2025.7.1.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목 |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 23,900,000원 | |
| | 기본금 | 21,000,000원 | 월 3,500,000원 x 6개월 |
| | 상여금 | | |
| | 기타 수당 | 2,900,000원 | 이사회(산하위원회) 미팅수당 |
| | | |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4) 사외이사 레이청야오

가) 재직기간 : 2021.4.1. ~ 2025.7.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목 |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 23,800,000원 | |
| | 기본금 | 21,000,000원 | 월 3,500,000원 x 6개월 |
| | 상여금 | | |
| | 기타 수당 | 2,800,000원 | 이사회(산하위원회) 미팅수당 |
| | | |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5) 사외이사 이장영

가) 재직기간 : 2023.3.31. ~ 2025.7.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23,600,000원 | |

| | | | |
|---|---|---|---|
| | 기본금 | 21,000,000원 | 월 3,500,000원 x 6개월 |
| | 상여금 | | |
| | 기타 수당 | 2,600,000원 | 이사회(산하위원회) 미팅수당 |
| | | |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6) 사외이사 김종열

가) 재직기간 : 2023.3.31. ~ 2025.7.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목 |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 23,600,000원 | |
| | 기본금 | 21,000,000원 | 월 3,500,000원 x 6개월 |
| | 상여금 | | |
| | 기타 수당 | 2,600,000원 | 이사회(산하위원회) 미팅수당 |
| | | |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7) 사외이사 통슈멍

가) 재직기간 : 2023.10.16. ~ 2025.7.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목 |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 26,200,000원 | |
| | 기본금 | 21,000,000원 | 월 3,500,000원 x 6개월 |
| | 상여금 | | |
| | 기타 수당 | 3,000,000원 | 이사회 의장(직책수당)<br>월 500,000원 x 6개월 |
| | | 2,200,000원 | 이사회(산하위원회) 미팅수당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 |

| | | | |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성명 | 사외이사와의 관계 |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담당 직위) | 계약체결 내용 |
|---|---|---|---|
| 이장영 | 본인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 -. 계약당사자: 김앤장 법률사무소<br>-. 계약내용<br>(1) 일반 법률 자문 계약 1건 (2025. 1월 체결)<br>(2) 사건 위임 계약 1건 (2025. 5월 체결)<br>(3) 세무 용역 계약 1건 (2025. 3월 체결) |

##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작성기준일자: 2025.12.31.]

| 성명 | 최초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재임 기간 | 담당 위원회 | 직위 | 경력 |
|---|---|---|---|---|---|---|
| 레이청야오 | '21.4.1. | '25.7.1. | 50개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4.1.~2025.7.1)<br>감사위원회 (2021.4.1.~2025.7.1)<br>보수위원회 (2023.10.16.~2025.7.1)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21.4.1.~2025.7.1) |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
| 쏭환쩡 | '21.4.1. | '23.9.4. | 29개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4.1.~2023.9.4)<br>보수위원회 (2021.4.1.~2023.9.4) | 선임 사외이사 (2021.4.1.~2023.9.4)<br>보수위원회 위원장 (2021.4.1.~2023.9.4) | 북경시 상공로펌 고급 파트너 |
| 이장영 | '23.3.31. | '25.7.1. | 27개월 | 감사위원회 (2023.3.31.~ 2025.7.1)<br>위험관리위원회 (2023.3.31~2025.7.1) | 감사위원회 위원장 (2023.3.31.~2025.7.1) | 김앤장 법률사무소 |
| 김종열 | '23.3.31. | '25.7.1. | 27개월 | 위험관리위원회 (2023.3.31.~2025.7.1)<br>감사위원회 (2023.3.31~2025.7.1)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2023.3.31.~2025.7.1) | 숭실대 겸임교수 |
| 통슈멍 | '23.10.16. | '25.7.1. | 20개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10.16.~2025.7.1)<br>보수위원회 (2023.10.16.~2025.7.1) | 선임 사외이사 (2023.10.16.~2025.7.1)<br>보수위원회 위원장 (2023.10.16.~2025.7.1) | 동방문창투자유한회사 이사장 |
| 김치중 | '25.7.1. | '27.6.30. | 6개월 | 감사위원회 (2025.7.1.~현재)<br>위험관리위원회 | 감사위원회 위원장 (2025.7.1.~현재)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손해보 |

| | | | | | | |
|---|---|---|---|---|---|---|
| | | | | (2025.7.1.~현재)<br>내부통제위원회<br>(2025.7.1.~현재) | | 험협회 부회장, 보험연수원 원장, 성균관대 및 국민대 겸임교수 |
| 윤성만 | ‘25.7.1. | ‘27.6.30. | 6개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2025.7.1.~현재)<br>감사위원회<br>(2025.7.1.~현재)<br>위험관리위원회<br>(2025.7.1.~현재)<br>보수위원회<br>(2025.7.1.~현재)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br>(2025.7.1.~현재)<br>보수위원회 위원장<br>(2025.8.28.~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손해보험협회 자문교수, 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 보험개발원 자문교수 |
| 권혁준 | ‘25.7.1. | ‘27.6.30. | 6개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2025.7.1.~현재)<br>감사위원회<br>(2025.7.1.~현재)<br>위험관리위원회<br>(2025.7.1.~현재)<br>보수위원회<br>(2025.7.1.~현재)<br>내부통제위원회<br>(2025.7.1.~현재) |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br>(2025.7.1.~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 교수, 한국세무학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적합한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였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46조에서부터 제51조). 이는 지배구조법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1) 일반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6조에서부터 제51조까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및 지원, 최고경영자의 자격,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절차, 추천 관련 공시,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6조에 따라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비상승계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1) 소극적 요건

#### ①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8조

#### ② 평가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시예저치앙 후보자는 최고경영자 추천 당시 대표이사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금융지주 편입 시점에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로 추천된 곽희필 후보자 역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① 자격요건

당사는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전반업무를 총괄하며,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② 평가

2025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시예저치앙 후보자는 금융, 보험 산업에 대한 전문성 및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재보험 및 리스크관리 등의 분야에서 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고 글로벌 금융회사의 수석대표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시예저치앙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여부 등과 직무수행 가능성 등을 검증하고 2025년 3월 7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결정,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으며 2025년 7월 1일까지 당사의 최고경영자로 근무하였습니다.

2025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곽희필 후보자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약 30년간 재무 및 보험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을 총괄하는 부사장과 GA부문 대표이사로서 보험영업 및 전략, 조직운영 등 실질적 경영 리더십을 겸비하는 등 경영성과 창출의 책임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해 왔습니다. 따라서 곽희필 후보자는 당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CEO로 요구되는 금융보험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곽희필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여부 등과 직무수행 가능성 등을 검증한 결과 2025년 6월 11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결정,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당사의 최고경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당사는 후보자 시예저치앙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해 2025년 3월 7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3명의 찬성으로 시예저치앙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였고, 후보자 시예저치앙은 2025년 3월 3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로 선임되어 2025년 7월 1일까지 최고경영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후보자 곽희필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해 2025년 6월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3명의 찬성으로 곽희필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였고, 후보자 곽희필은 2025년 7월 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최고경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경영승계절차 운영현황>**

| 일자 | 운영현황 | 비고 |
|---|---|---|
| 2025.3.7. | 최고경영자 후보추천<br>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결과 검토<br>최종후보자 결정 |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 2025.3.31. | 사내이사 선임 주주총회 부의 | 정기주주총회 |
| 2025.3.31. | 최고경영자 선임 | 제4차 이사회 |
| 2025.6.11. | 최고경영자 후보추천<br>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결과 검토<br>최종후보자 결정 |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 2025.7.1. | 사내이사 선임 주주총회 부의 | 임시주주총회 |
| 2025.7.1. | 최고경영자 선임 | 임시주주총회 |

주) 2025년 7월 1일 정관 개정으로 대표이사 선임 의결 주체가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변경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수립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활동을 할 예정이며, 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총괄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압축, 예비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3) 후보군 현황

당사는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부서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외에도 채용, 배치, 인사관리, 성과관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는 이해상충 소지가 적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인사팀

- 직원수 : 총 6명

- 담당자 : 팀장(총괄) 1명, 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1명, 사원 2명

**운영내역**

| 일자 | 운영내역 | 비 고 |
|---|---|---|
| 2025.3.7. |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br>· 감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br>· 대표이사 후보 추천 승인 |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 2025.6.11. |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br>· 감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br>· 대표이사 후보 추천 승인 |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 6. 감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그 역할 등에 관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현안과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업무집행 전반을 독립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 감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경영전문가, 리스크 및 회계전문가 등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등 안건에 대한 감독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이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에 직접 참석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하거나 감사보조조직에 위임된 일상감사 업무의 보고수령을 통해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 절차의 준수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 개최된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에 감사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고, 2025년 전체 254건의 일상감사업무에 대해 총 7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지배구조법 제20조 제4항)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이에 따라 당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업무집행책임자로 하여금 대표이사 및 해당부서에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또는 변상,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피감사 팀장 또는 관련 팀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감사팀

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 차기 감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프로세스를 점검하였고, 2018년 11월 1일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2024년 12월 19일 KPMG(삼정회계회계법인)를 FY2025~2027 3개년 외부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동년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1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문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3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집행책임자와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 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 제9호, 제10호) 감사위원회는 법령, 정관 등에서 정한 고유권한을 제외하고 내부감사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및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집행책임자에게 내부감사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그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5년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된 “2025년 연간감사계획”, 2025년 제8차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된 “2025년 내부감사계획 변경”에 따라 실시한 종합/부문/특별감사 내용 등에 대해 매분기 “내부감사 활동보고”를 통해 그 결과와 조치의견을 감사업무집행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사항 중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조기구를 통하여 회계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및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EY(한영회계법인)가 당사의 FY2024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제1차 감사위원회는 FY2024 결산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현금성자산 상각 후 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재무담당임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재무담당임원으로부터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받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제1차 감사위원회는 재무담당임원으로부터 점검 항목의 선정 및 통제활동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 마) 기타(내부통제 주요활동 보고 수령 등)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점검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1호).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완전판매지표 관리,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 내부통제교육 실시현황, 사규체계 재정비 등 주요 업무현황과 자금세탁방지업무, 내부신고 운영현황 등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한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 밖에 당사 감사위원회는 내규에서 내부감사의 운영 및 통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연간 및 중장기 내부감사계획 심의 및 의결, 감사규정의 제ㆍ개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25년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2025년 연간감사 계획(안)을, 2025년 제7차 감사위원회에서 연간감사 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25년 제9차 감사위원회에서 2026년 연간감사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지배구조법 제19조, 상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5년 말 현재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2013년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한 이래 계속하여 감사위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경영진 등의 직무를 독립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 포함)은 보험업 관계법령과 정관, 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임원의 자격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특히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5년 말 현재 당사 감사위원 3명은 보험분야, 회계분야, 금융 및 정보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 등에 부합되게 선임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김치중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의 오랜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연수원 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윤성만 위원과 권혁준 위원은 각각 세무학 박사학위, 정보시스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현재 관련학과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 2) 구성원

| 성명 | 상임/사외/<br>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김치중 | 사외 | 현)위원장 | 2025.7.1. | 2027.6.30. |
| 윤성만 | 사외 | 현)위원 | 2025.7.1. | 2027.6.30. |
| 권혁준 | 사외 | 현)위원 | 2025.7.1. | 2027.6.30. |
| 이장영 | 사외 | 구)위원장 | 2023.3.31. | 2025.7.1. |
| 레이청야오 | 사외 | 구)위원 | 2021.4.1. | 2025.7.1. |
| 김종열 | 사외 | 구)위원 | 2023.3.31. | 2025.7.1. |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는 총 10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감사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참석 감사위원은 사안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이며 실효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5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5. 03. 14.(금) 09:30**

**〔안건 통지일 : 2025. 03. 11.〕**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이장영 | 레이청야오 | 김종열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실태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제72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외부감사인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Compliance 활동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마. FY2024 결산감사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바.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사. 내부감사 활동 | 특이의견 없음 | | | |

| | | | | | |
|---|---|---|---|---|---|
| | 보고 | | | | |
| 4. 의결안건[2] | | | | | |
| | 가. FY2024 결산승인(제72기)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제72기 영업보고서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2025년 연간 감사계획(안)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안건

가) 외감법에 따른 재무회계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현황 보고

나) 외부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 임원의 FY2024 회계연도 감사결과 보고

다) FY2024 회계연도에 대한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 잉여금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 계약자 배당금 계산의 적정성 및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검증 의견 보고

라)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관련 주요 활동 보고

마) 감사보조조직의 FY2024 결산감사 보고

바) 감사보조조직의 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보고

사) 2024.12월~2025.02월까지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2) 의결안건

가)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에 의거 FY2024(제72기) 결산 승인

나) 상법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에 의거 FY2024 영업보고서 승인

## 나) 2025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5. 03. 31.(월) 13:30

〔안건 통지일 : 2025. 03. 28.〕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이장영 | 레이청야오 | 김종열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의결안건 없음 | | | |
| 5. 심의안건[1] | | | | | |
| |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사규 개정 심의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심의안건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규 개정 사항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전 감사위원회 심의

## 다) 2025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5. 6. 26.(목) 15:00

〔안건 통지일 : 2025. 6. 25.〕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이장영 | 레이청야오 | 김종열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내부감사 활동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2] | | | | | |
| | 가.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의 건 | 의결권 없음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외부감사인의 비감사계약 사전 승인 요청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안건

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관련 주요 활동 보고

나) 2025.03월~2025.05월까지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2)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안) 승인

나) 2025년 세무조정 계약을 위한 업체(KPMG) 선정 승인

## 라) 2025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5. 7. 1.(화) 17:50

〔안건 통지일 : 2025. 6. 28.〕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2] | | | | | |
| | 가.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의 건 | 의결권 없음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내부감사규정 개정 승인 요청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안건

가)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후 보고

2)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안) 승인

나) 내부감사규정 개정 승인

## 마) 2025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5. 7. 31.(목) 10:00

〔안건 통지일 : 2025. 7. 24.〕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내부감사관련 지침 개정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2] | | | | | |
| | 가.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장 임면 동의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안건

가)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계획 보고

나) 내부감사업무처리지침 및 전산감사지침 개정 후 보고

2)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장(감사실장) 선임 동의 승인

## 바) 2025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5. 8. 28.(목) 15:30

〔안건 통지일 : 2025. 8. 21.〕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1] | | | | | |
| |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 사) 2025년도 제7차 감사위원회 : 2025. 10. 1.(수) 13:30

〔안건 통지일 : 2025. 9. 24.〕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년 2Q 내부통제 업무수행 결과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제73기 재무제표 감사계획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2025년 AML 평가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내부감사활동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2] | | | | | |
| | 가. FY2025~2027 변액펀드 외부회계감사인 선전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5년 내부감사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안건

가) 준법감시인의 2025년 2분기 내부통제관련 주요 활동 보고

나) 외부회계감사인의 2025년 재무제표 감사계획 보고

다)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고

라) 2025.06월~2025.08월까지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2) 의결안건

가) FY2025~2027 변액펀드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승인

나) 2025년 하반기 내부 감사계획 변경 승인

## 아) 2025년도 제8차 감사위원회 : 2025. 11. 6.(목) 09:30

〔안건 통지일 : 2025. 10. 30.〕

| 항목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심의안건[1] | | | | | |
| | 가.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심의안건

가) 감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전 감사위원회 심의

## 자) 2025년도 제9차 감사위원회 : 2025. 12. 2.(화) 09:00

〔안건 통지일 : 2025. 11. 25.〕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전산감사지침 폐지 및 감사 업무 지침 개정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부실채권심의 지침 제정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내부감사활동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2] | | | | | |
| | 가.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감사정책 폐지 및 감사업무규정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안건

가) 감사업무지침 일부 개정 및 전산감사지침 폐지 및 감사업무지침 일부 개정 보고

나) 부실채권 심의 지침 제정 후 보고

다) 2025.09월~2025.11월까지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2) 의결안건

가)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제정 승인

나) 기존 감사정책 폐지 및 감사업무 규정 일부 개정 승인

다) 2026년 내부감사계획 승인

차) 2025년도 제10차 감사위원회 : 2025. 12. 23.(화) 09:00

〔안건 통지일 : 2025. 12. 16.〕

| 항목 | | 위원별 활동 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김치중 | 윤성만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1] | | | | | |
| | 가. 감사보조조직의 장 임면 동의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5. 심의안건[2] | | | | | |
| | 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심의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감사보조조직의 장 임면 동의 승인

2) 심의안건

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전 감사위원회 심의

### 3)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부감사 품질평가과정에서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감사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외부감사 EY(한영회계법인)와 감사위원회가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라. 감사보조기구 등

### 1) 감사보조기구 설치현황

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보조기구으로서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담당(감사팀)을 설치해 두고,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내부감사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감사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보조기구의 장인 감사업무집행책임자에 위임하여 그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감사업무집행책임자는 본인 주관 하에 내부감사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팀 직원인 내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되 총괄적인 관리책임과 내부감사 품질의 적정성을 유지합니다. 감사팀은 2025년 말 현재 전체 7명(감사팀장 포함)의 내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2) 외부전문가 활용 내역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 및 제415조의2).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2025년 말 현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 7. 위험관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당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경영관리,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유동성 위험등 제반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로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위험관리 업무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전사적 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며 위험관리지표의 승인 및 허용한도 설정,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적정 투자 한도 및 손실 허용 한도의 승인, 위험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위험관련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하에 위험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세부 위험 카테고리별 관련 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위험관리협의회와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모델의 생성, 운영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델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21조 및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경영전략에 부합하도록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며, 수립된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하고 필요시 위험관리위원회 산하조직인 위험관리협의회에 위임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정책 및 위험관리규정을 내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험관리정책 및 위험관리규정은 위험관리 철학과 원칙, 위험관리 조직, 위험관리 체계 및 절차, 위기대응체계,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 등 제반 위험에 대하여 중장기적 회사가치의 증대와 고객의 이익 제고의 관점에서 개별 위험 및 위험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자본 적정성, 자산 부채 관리, 운영위험관리에 대한 2025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에 대해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

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8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2026년도 보장성 상품의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및 확정금리저축보험 금리의 적용 범위, 2026년 파생상품 운용전략을 승인하였고 2025년 제9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2026년 투자위험한도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승인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승인된 적정투자한도 및 대체투자모니터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매분기 보고 받고 있으며, 2021년 6월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제정됨에 따라 2021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시행 후 2022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부터 2025년 4분기까지 매 분기 '고위험투자자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해서 심의·의결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여 2022년 12월 15일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당사의 위험관리기준(정책)개정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2023년 1월 신지급여력제도 변경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하는 사항'과 회사에서 수행한 '지배구조평가 개선작업'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위험관리책임자의 보고체계 확립 권고사항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 요구사항 반영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5년 제7차 이사회를 통하여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됨에 따라 그룹 위험관리 내규를 관련 사규에 반영하기 위해 당사의 위험관리기준(정책)을 기존 반영된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금융지주 "위험관리정책" 및 "위험관리규정" 체계에 맞추어 분리 및 보완하였습니다.

### 마) 기타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여 회사의 위험관리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2025년도 말 기준 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3명(윤성만, 김치중, 권혁준)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명(윤성만, 김치중, 권혁준)의 위원이 사외이사입니다.

2025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윤성만 사외이사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금융, 경영, 경제, 회계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당사의 제반 위험관리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 위험관리책임자는 의결권은 없으나 위험관리위원회 간사로써 위험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각종 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구성원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윤성만 | 사외 | 현)위원장 | 2025.7.1. | 2027.6.30. |
| 김치중 | 사외 | 현)위원 | 2025.7.1. | 2027.6.30. |
| 권혁준 | 사외 | 현)위원 | 2025.7.1. | 2027.6.30. |
| 이장영 | 사외 | 구)위원장 | 2023.3.31. | 2025.7.1. |
| 김종열 | 사외 | 구)위원 | 2023.3.31. | 2025.7.1. |
| 시예저치앙 | 상임 | 구)위원 | 2019.4.4. | 2025.7.1. |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는 총 9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참석률은 100%입니다. 그중 2025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 2025년도 투자위험한도 설정 승인요청, 2025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24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의 승인요

청, 2025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요청 및 2025년 파생상품 전략 변경 승인요청, 2025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요청, 위험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위험관리규정 개정 승인요청, 제7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PF) 예외평가 승인요청, 지주 편입에 따른 위험관리 관련 규정 폐지 및 개정 승인요청, 2025년 제8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파생상품 운용전략 승인요청, 2026년도 적용이율(보장계약), 최저보증이율 및 확정금리저축성보험 금리의 적용 수준 승인요청, 2026년도 위험관리전략 승인요청, 2026년 위기대응체계수립 승인요청, 위험관리규정개정(안) 승인요청, 2026년 유동성리스크관리방안 승인요청, 2025년 K-ICS 운영위험액 한도 증액 승인요청, 2025년 제9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변경 승인요청, 2026년 위험성향 및 내부자본 한도 설정 승인요청, 2026년 투자위험한도 설정 승인요청, 2026년 주요위험평가대상 승인요청에 대하여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가) 2025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3. 14.(금) 16:30

〔안건 통지일 : 2025. 3. 11.〕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종열 | 시예저치앙 | 이장영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가. 2024년 4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나. 2024년 상품개발현황 및 2025년 신상품 개발 계획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다. 2024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 승인건 사전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라. K-ICS 문서화 운영 이행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마. 2025년 주요위험평가체계 및 관리방안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바. 2024년 4분기 Risk Dashboard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2] | | | | |
| 가.2025년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요청 | | | | |
| | 나.2025년도 투자위험한도 설정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안건

가) 2024년 4분기 500억원 이상 신규대체투자건 보고

나) 2024년 상품전략, 상품개발현황 등의 이행결과 및 2025년 상품 전략, 신상품개발계획 보고

다) 2024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지급여력비율 및 제도강화 사항 영향 보고

라) K-ICS 문서화 이행 결과 보고

마) 2025년 경영전략 및 재무목표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위험평가 대상 9개를 선정하여 보고

바) 2024년 4분기 주요위험평가 결과보고,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한도 결과보고

2) 의결안건

가) 2025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 (K-ICS 예측, 지급여력비율 관리목표, K-ICS 위험자본 한도 등)을 승인

나) 2025년 투자위험한도 설정 승인

## 나) 2025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3. 31(월) 16:20

〔안건 통지일 : 2025. 3. 28.〕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종열 | 시예저치앙 | 이장영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1] | | | | |
| 가. 2024년말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의 승인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2024년말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에 대한 회계법인 검증 시행 결과 승인

## 다) 2025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5. 21.(수) 14:00

〔안건 통지일 : 2025. 5. 16.〕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종열 | 시예저치앙 | 이장영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1] | | | | |
| 가.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5년 파생상품 전략 변경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 승인
나) 2025년 파생상품 운용전략 변경 승인

## 라) 2025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06. 26.(목) 15:15
〔안건 통지일 : 2025. 6. 25.〕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종열 | 시예저치앙 | 이장영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가. 2025년 1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나. 2024년 4분기 통합 위기상황(자체 시나리오) 분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다. 2025년 1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라. 2024년 4분기 내부모형 산출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마. 2025년 1분기 Risk Dashboard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 | 의결안건 없음 | | | |

1) 보고안건
가) 2025년 1분기 중/후순위 및 고LTV 투자 등 고위험 대체투자건 보고
나) 2024년 4분기 금융감독원제공 및 자체시나리오에 따른 통합 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고
다) 2025년 1분기 K-ICS 결산결과 및 주요 변동 요인 보고
라) 2024년 4분기 내부모형 결산결과 및 주요 변동 요인 보고
마) 2025년 1분기 주요위험평가 결과보고,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한도 결과 보고

## 마) 2025년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7. 1.(화) 18:00
〔안건 통지일 : 2025. 6. 27.〕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성만 | 김치중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1] | | | | |
| 가.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 | | | |
| | 나. 위험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위험관리규정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 승인

나)위험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위험관리규정 개정 승인

## 바) 2025년도 제6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8. 28.(목) 13:00

〔안건 통지일 : 2025. 8. 21.〕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성만 | 김치중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년 상반기 상품개발현황 및 하반기 상품 개발 계획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2025년 2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2025년 2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보험 자회사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마. 2025년 2분기 Risk Dashboard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바. 2025년 2분기 기타 위험관리 모니터링 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의결안건 없음 | | | |

1) 보고안건

가) 2025년 상품개발현황 및 하반기 상품 전략, 신상품개발계획 보고

나) 2025년 2분기 중/후순위 및 고LTV 투자 등 고위험 대체투자건 보고

다) 2025년 2분기 K-ICS 결산결과 및 주요 변동 요인 보고

라) 보험 자회사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프로젝트 이행 모니터링 보고

마) 2025년 2분기 주요위험평가 결과보고,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한도 결과 보고

바) 2025년 2분기 기타 위험관리 모니터링 현황 보고

## 사) 2025년도 제7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10. 1.(수) 15:00

〔안건 통지일 : 2025. 9. 24.〕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가결 여부 |
|---|---|---|

| | | | | | |
|---|---|---|---|---|---|
| 1. 위원 성명 | | 윤성만 | 김치중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년도 2분기 자체 위기상황시나리오 분석 결과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2025년 7월 기준 미국 국채선도 한도 근접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2] | | | | | |
| | 가.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PF) 예외평가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지주 편입에 따른 위험관리 관련 규정 폐지 및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안건

가) 2025년 2분기 자체시나리오에 따른 통합 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고

나) 미국 국채선도 소진율 한도 근접 보고

2) 의결안건

가)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PF) 예외평가 승인

나) 위험관리지침, 운영리스크관리지침 제정 및 집합투자재산위험관리규정 개정 승인

## 아) 2025년도 제8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12. 2.(화) 10:00

〔안건 통지일 : 2025. 11. 25.〕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성만 | 김치중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2025년 손해율악화 원인 및 관리방안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2025년 3분기 K-ICS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2025년 3분기 RiskDashboard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2025년 사업연속성관리체계 운영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4. 의결안건[2] | | | | | |
| | 가. 2026년도 파생상품 운용전략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6년 적용이율(보장계약), 최저보증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이율 및 확정금리저축성보험 적립이율 적용수준 승인 요청 | | | | |
| | 다. 2026년 위험관리전략(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2026년 위기대응체계수립(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위험관리규정개정(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2026년 유동성리스크관리방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2025년 K-ICS 운영위험액 한도 증액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보고안건

가) 2025년 손해율악화 원인 및 관리방안 보고

나) 2025년 3분기 K-ICS 결산결과 및 주요 변동 요인 보고

다) 2025년 3분기 주요위험평가 결과보고,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한도 결과보고

라) 2025년 사업연속성관리체계 주요 운영결과 및 2026년 운영계획 보고

2) 의결안건

가) 2026년 파생상품 한도 및 운용전략 승인

나) 2026년 적용이율(보장계약), 최저보증이율 및 확정금리저축성보험 금리 적용 수준 승인

다) 2025년 위험전략(K-ICS 예측, 지급여력비율 관리목표 등)을 위험관리위원회 승인

라) 2026년 위기대응체계 수립(안) 승인

마) 위험관리규정 개정 승인

바) 2026년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승인

사) K-ICS 운영위험액 한도 증액 승인

## 자) 2025년도 제9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 12. 23.(화) 09:30

〔안건 통지일 : 2025. 12. 16.〕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성만 | 김치중 | 권혁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1)] | | | | |
| 가.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변경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6년 위험성향 및 내부자본 한도 설정(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2026년 투자위험한도 설정(안)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라. 2026년 주요위험평가대상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변경 승인

나) 2026년 위험성향 및 내부자본 한도 승인

다) 2026년 투자위험한도 설정 승인

라) 2026년 주요위험평가대상 선정 승인

### 3) 평가

당사는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 ·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전년도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위험관리위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 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8. 내부통제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 총괄

당사의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2025년 3월 31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내부통제 체계가 회사 내에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실무적인 지원을 위해 준법경영팀을 간사 부서로 두고 현업 부서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내부통제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며, 2025년(설치 원년)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내부통제위원회는 전사 내부통제의 기본방침과 중장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회사 전반의 업무 수행이 법규에 부합하도록 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3월 이사회내 위원회로 설치되었고, 2025년 7월 개최된 제7차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나)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정착방안 마련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조직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윤리 관련 규정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준법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6년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하여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성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합니다.

당사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및 그룹사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두 차례(7월, 11월) 개정 승인함으로써,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 라)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내부통제위원회는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당사는 2025년 7월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의 근간이 되는 내부통제기준운영규정을 내부통제규정으로 전면 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하여 내부통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마)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보고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조치 요구

회사는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조치 및 주요 사항에 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 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내부통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보고에 대한 점검·평가를 진행하고,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나. 구성(내부통제위원회위원)

### 1) 총괄

당사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및 내규에 따라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과반수(2인)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25년 말 현재 위원들은 금융, 경영, IT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서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이며 연세대학교 정보시스템 박사로서 한국증권거래소(KRX) 차세대 시스템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디지털 금융 및 시스템 통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김치중 사외이사는 내부

통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및 런던사무소장, 보험연수원장을 역임한 금융감독 및 보험 산업 정책 분야의 권위자이며, 감독 당국의 시각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였습니다. 곽희필 사내이사는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서 ING생명보험,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등 글로벌 및 국내 선도 보험사에서 부사장을 역임하고,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 전문가로서,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2) 구성원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권혁준 | 사외 | 현)위원장 | 2025.7.1. | 2027.6.30. |
| 김치중 | 사외 | 현)위원 | 2025.7.1. | 2027.6.30. |
| 곽희필 | 상임 | 현)위원 | 2025.7.1. | 2027.6.30. |
| 이장영 | 사외 | 구)위원장 | 2025.3.31. | 2025.7.1. |
| 시예저치앙 | 상임 | 구)위원 | 2025.3.31. | 2025.7.1. |
| 김종열 | 사외 | 구)위원 | 2025.3.31. | 2025.7.1. |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 3월 31일 내부통제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25년에는 총 2차례에 걸쳐 내부통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위원이 100% 참석하여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기틀이 되는 규정 제·개정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가) 2025년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 2025. 7. 1.(화) 17:30
〔안건 통지일 : 2025. 6. 28.〕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권혁준 | 김치중 | 곽희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1] | | | | |
| 가. 내부통제 기준 운영규정 전면 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승인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내부통제 기준 운영규정 전면 개정(사규명을 내부통제규정으로 개정) 및 내부통제지침 제정 승인

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승인

### 나) 2025년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 : 2025. 11. 6.(목) 9:00

〔안건 통지일 : 2025. 10. 30.〕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 여부 |
|---|---|---|---|---|---|
| 1. 위원 성명 | | 권혁준 | 김치중 | 곽희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안건[1] | | | | | |
| |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과 이사회(내 위원회 포함) 규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승인

### 3) 평가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5조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위원회 설치 원년으로서 내부통제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내부통제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 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9. 경영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10. 리스크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2025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 행정지도 및 이와 관련한 당사에 대한 권고 및 조치사항, 개선계획은 없습니다.

##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당사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관련 자체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2022년 상반기에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을 개정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7년 7월 1일로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어 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1. 보수위원회

### 가. 총괄

당사는 보상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및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수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그 근거로 하여 2009년 9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장 제5절에서 기본적인 운영원칙을 정한 후, 보수위원회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결의방법, 의결사항, 관계자 출석, 의사록 작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

####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당사 보수위원회는 총 3인(윤성만, 권혁준, 양기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인(윤성만, 권혁준)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윤성만 이사가 보수위원회의 대표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윤성만 이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및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공인회계사 및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을 보유하였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세무, 회계분야 전문가입니다. 권혁준 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및 연세대학교 정보시스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지급결제학회 부회장, 한국전자거래학회 및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등 금융경제 관련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춘 금융분야 전문가입니다. 양기현 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은행과 우리은행을 거쳐 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성장부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재무 및 전략기획분야 전문가입니다.

이 중 윤성만 이사는 현재 당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권혁준 이사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로 보수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7월 주주총회 이전까지는 통슈멍 이사(사외이사), 레이청야오 이사(사외이사), 리쭝위엔 이사(비상임이사)가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7월 주주총회 이전)

| 성명 | 직명 |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분야 종사경험 유무 | 약력 |
|---|---|---|---|---|
| Tong, Shumeng (통슈멍) | 위원장 | 사외이사 | 有 | 우하이궈쉬안에너지유한회사 이사장<br>중해국제안보회사 이사장<br>동방문창투자유한회사 이사장<br>베이징동방바이다 투자유한회사 이사장 |
| Lei, Chengyao (레이청야오) | 위원 | 사외이사 | 有 | 중국 인민대학교 응용금융학 교수<br>China Great Wall industry 본사 당조 서기 비서 |
| Li, Zhongyuan (리쭝위엔) | 위원 | 비상임이사 | 有 | 다자보험그룹 해외업무총괄<br>Keefe, Bruyette &Woods 부사장<br>ING그룹 Associate |

(2025년 7월 주주총회 이후)

| 성명 | 직명 |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분야 종사경험 유무 | 약력 |
|---|---|---|---|---|
| 윤성만 | 위원장 |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 有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br>한국세무학회 회장<br>한국회계학회 부회장<br>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세무학 박사<br>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br>육군사관학교 관리학사 경영경제 통합전공 |
| 권혁준 | 위원 |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 | 有 |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br>한국지급결제학회 부회장 |

| | | | | |
|---|---|---|---|---|
| | | 회 위원) | | 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br>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br>연세대학교 정보시스템 박사<br>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br>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경영학 학사 |
| 양기현 | 위원 | 비상임이사 | 有 | 우리금융지주 사업성장부 본부장<br>우리금융지주 사업포트폴리오부 부장<br>우리은행 미래전략부 부부장~부장 대우<br>KTB네트워크 미래전략팀, 기획팀<br>한국은행 조사제1부, 비서실<br>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 2) 구성원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윤성만 | 사외 | 현)위원장 | 2025.7.1. | 2027.6.30. |
| 권혁준 | 사외 | 현)위원 | 2025.7.1. | 2027.6.30. |
| 양기현 | 비상임 | 현)위원 | 2025.7.1. | 2028.6.30. |
| 통슈멍 | 사외 | 구)위원장 | 2023.10.16. | 2025.7.1. |
| 레이청야오 | 사외 | 구)위원 | 2021.4.1. | 2025.7.1. |
| 리쭝위엔 | 비상임 | 구)위원 | 2021.11.23. | 2025.7.1. |

### 3)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다. 권한과 책임

### 1) 총괄

당사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보수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임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보수한도에 대한 승인과 그 세부내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5년 3월 7일에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 그리고 3월 31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24년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8월 28일 개최된 제5차 보수위원회, 12월 23일 개최된 제6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5년 6월 26일 개최된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퇴직금규정과, 8월 28일 개최된 제5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보수규정 등 보수정책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및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비추어 매우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 준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7)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금융회사 내 모든 사업부

② 해외: 해당 사항 없음

### 8)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7조에 보수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경영진 및 특정 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경영진의 범위는 당사 보상정책 적용대상자인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이사대우로, 특정 직원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경영진 등은 대표이사 사장 1명, 부사장 1명 등 총 16명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 분류 | 인원수 | 직명 |
|---|---|---|
| 임원 | 16명 |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이사대우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없음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없음 | |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현재 윤성만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5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필요 시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결의사항 중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 2) 활동내역 - 회의 개최내역

#### 가) 2025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5. 3. 7.

[안건 통지일: 2025. 3. 5.]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통슈멍 | 레이청야오 | 리쭝위엔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 안건[1] | | | | |
| 가. 2024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2024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하여 주총 20일 전 공시를 위한 위원회 결의

### 나) 2025년 제2차 보수위원회 : 2025. 3. 31.
### [안건 통지일: 2025. 3. 28.]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통슈멍 | 레이청야오 | 리쭝위엔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 안건[1] | | | | |
| 가. 2024년도 성과평가 및 2025년도 성과목표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5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제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2025년도 임원 보수총액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24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임원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위원회 결의
나)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제도에 대한 위원회 결의
다) 임원 보수총액에 대한 위원회 결의
라) 2024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최종 업데이트하여 4월초 공시를 위한 위원회 결의

### 다) 2025년 제3차 보수위원회 : 2025. 4. 14.
### [안건 통지일: 2025. 4. 11.]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통슈멍 | 레이청야오 | 리쭝위엔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4. 의결 안건[1] | | | | |
| 가.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4년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한 위원회 결의
나)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에 대한 위원회 결의

### 라) 2025년 제4차 보수위원회 : 2025. 6. 26.
### [안건 통지일: 2025. 6. 25.]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통슈멍 | 레이청야오 | 리쭝위엔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 안건[1] | | | | |
| 가. 임원 퇴직금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임원 퇴직금규정 개정에 대한 위원회 결의

### 마) 2025년 제5차 보수위원회 : 2025. 8. 28.
### [안건 통지일: 2025. 8. 21.]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성만 | 권혁준 | 양기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 안건[1] | | | | |
| 가.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5년 하반기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임원 성과보수체계 변경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 | | | |
| 라. 임원 보수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한 위원회 결의
나)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위원회 결의
다) 임원 성과보수체계 변경에 대한 위원회 결의
라) 임원 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위원회 결의

**바) 2025년 제6차 보수위원회 : 2025. 12. 23.**
**[안건 통지일: 2025. 12. 16.]**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성만 | 권혁준 | 양기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4. 의결 안건[1] | | | | |
| 가. 특별퇴직금 지급(안)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임원 성과보수체계 변경(안)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의결안건
가) 특별퇴직금 지급에 대한 위원회 결의
나) 임원 성과보수체계 변경에 대한 위원회 결의

### 3) 평가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보수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수준,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 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보수체계

### 가. 주요사항

####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세전이익, 신계약CSM, CSM잔액), 건전성 지표(지급여력 비율)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지표로는 효율성 지표(유지율, 손해율, 보장성 초회보험료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전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무지표(지급여력비율, 신계약CSM 등)와 비재무적 지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전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무지표(지급여력비율, 신계약CSM 등)의 달성정도와 비재무적지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성과보상이 연동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60%는 보수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며 나머지 40% 상당액은 3개년이 지난 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변동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변동보상액을 환수 및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변동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성과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총 4개년간 평가한 후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변동보상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시점에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상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상액으로 분류하고, 경영진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상여는 변동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으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조에 근거하여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액은 당해년도 발생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60%를 보수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며 나머지 40% 상당액은 성과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총 4개년간 평가한 후(3개년 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2008년 1월부터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일반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그리고 성과공유라는 취지하에서 Profit Sharing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와 연동된 성과보너스 등의 변동급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시상의 형태로 우수 조직 및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ABL Award를 통해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2008년 1월부터 전 직원에 대하여 호봉제에서 성과급제 임금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체계 변경이 아니라 장기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직무직급제도, 평가제도,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전반의 변경을 통한 '성과중심경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기관의 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임원보수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경우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7년 9월 10일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회사의 임원 성과급의 이연지급을 결의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의 성과보너스 지급 재원 산정 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 편입 이후인 2025년 8월 28일 제5차 보수위원회 결의로 성과평가 결과가 임원의 보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성과보수체계를 정비하였고, 2025년 12월 23일 제6차 보수위원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직급체계 변경과 연계하여 보상체계도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배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9)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은행에 한함)

## 나. 보수 세부사항

### 1) 임직원 총 보수

(단위 : 명, 억원)

| 구분 | 임직원 보수총액 (A) |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 | 임직원수 (C) | 임직원 평균보수 (A/C) |
|---|---|---|---|---|---|
| | | | 비율(A/B) | | |
| 전년도 (2024년) | 768.3 | 1,207.3 | 0.64 | 848 | 0.91 |
| 당해년도 (2025년) | *[2026.4월 공시 예정]* | | | | |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 구분 | | 임원 | | 직원 | | | | |
|---|---|---|---|---|---|---|---|---|
| | | 등기 | 비등기 | 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사원 |
| 전년도 (2024년) | 보수총액 | 12.1 | 35.3 | 221.8 | 423.1 | 24.0 | 18.2 | 33.8 |
| | 성과보수액 | 3.5 | 10.3 | 16.2 | 21.9 | 1.3 | 0.6 | 0.7 |
| 당해연도 (2025년) | 보수총액 | *[2026.4월 공시 예정]* | | | | | | |
| | 성과보수액 | | | | | | | |

### 3) 직급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임직원 1인당 평균액)

(단위 : 억원)

| 구분 | | 임원 | 직원 | | | | 임직원 평균 보수 |
|---|---|---|---|---|---|---|---|
| | | | 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
| 전년도 (2024년) | 남성 | 1.67 | 1.15 | 0.95 | 0.78 | 0.63 | 0.32 |
| | 여성 | 1.82 | 1.08 | 0.88 | 0.66 | 0.52 | 0.40 |
| | 전체 | 1.69 | 1.14 | 0.91 | 0.71 | 0.57 | 0.36 |
| 당해년도 (2025년) | 남성 | *[2026.4월 공시 예정]* | | | | | |
| | 여성 | | | | | | |
| | 전체 | | | | | | |

주1) 개별 항목은 직급 및 성별에 따른 1인당 평균보수액(보수총액/임직원수)을 기재

##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 구분 | | 수급자수[주1)] | 기본급[주2)] | 성과보수액[주2)] | |
|---|---|---|---|---|---|
| | | | | | 이연지급 대상 |
| 전년도 (2024년) | 임원 | 19 | 32.5 | 12.1 | 4.2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 - |
| 당해연도 (2025년) | 임원 | *[2026.4월 공시 예정]* |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 성과보수액 | | | | |
|---|---|---|---|---|---|---|
| | | | 현금 | 주식[주1)] | 주식연계 상품[주2)] | 기타[주3)] |
| 전년도 (2024년) | 임원 | 12.1 | 12.1 | - | -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 - | - |
| 당해연도 (2025년) | 임원 | *[2026.4월 공시 예정]* | |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 이연보수액 | | |
|---|---|---|---|---|
| | | | 지급확정 | 지급미확정 |
| 전년도 (2024년) | 임원 | 12.5 | 12.5 | 0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0 | | |
| 당해연도 (2025년) | 임원 | *[2026.4월 공시 예정]*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 이연보수액 | | | | |
|---|---|---|---|---|---|---|
| | | | 현금 | 주식 | 주식연계상품 | 기타 |
| 전년도 (2024년) | 임원 | 12.5 | 12.5 | - | -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 - | - |
| 당해년도 (2025년) | 임원 | *[2026.4월 공시 예정]* | |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 구분 | | 이연보수액 | | | | | |
|---|---|---|---|---|---|---|---|
| | | | t기 | t-1기 | t-2기 | t-3기 | 이전 |
| 전년도 (2024년) | 임원 | 12.5 | 4.2 | 4.4 | 2.4 | 1.5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 - | - | |
| 당해년도 (2025년) | 임원 | *[2026.4월 공시 예정]* | | |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22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2년(t기) 발생분, 2021년(t-1기) 발생분, 2020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 구분 | | 이연보수액 | | |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주4)] |
|---|---|---|---|---|---|
| | | 축소액[주1)] | 직접적 조정[주2)] | 간접적 조정[주3)] | |
| 전년도 (2024년) | 임원 | 해당없음 |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25년) | 임원 | 해당없음 |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 구분 | | 수급자수 | 퇴직보수액 |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 (2024년) | 임원 | 0 | 0 | 0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25년) | 임원 | *[2026.4월 공시 예정]*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 8)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9)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10)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 건수 및 금액(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국문으로는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ABL Life Insurance Co., Ltd.(이하 "회사"라고 한다)라 한다. (2017년 7월 21일 본조 개정)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명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그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 자산 이용
   가. 국채, 지방채, 주식, 사채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나.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다. 금융기관에의 예금 및 신탁, 대출 및 어음의 할인
   라.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자산이용 방법
3. 보험업법 및 관계금융법령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기타 상기 목적과 관련되거나 그에 부수하는 업무 및 활동

**제3조(소재지 및 점포 등의 설치)** 회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역에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bllife.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2013년 2월 15일 본조 개정), (2017년 7월 21일 본조 개정)

**제5조(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제 2 장 주 식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 십만주권, 백만주권, 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신주발행)** <1> 회사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 그들 각자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3> 외국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경우 그 권리행사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얻는 데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명의개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권의 불소지)** <1>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이미 발행 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주가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질권의 등록)** <1> 회사의 주식에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은 질권이나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또는 전질이나 질권 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대표이사의 이서증빙)** 제10조, 제1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주권 이면에 대표이사가 증빙한 후 이를 청구자에게 환부한다.

**제14조(주권의 발행)** <1> 주권의 상실에 의하여 재발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제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권을 오손하거나 훼손한 때 또는 주권을 분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그 주권을 첨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또는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1> 회사는 매 결산기 말일의 익일부터 그 기의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특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의결권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간주할 수 있다.
<2> 전 항 외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고한 후 임시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회사의 주주와 등록질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와 인감 또는 서명을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017년 2월 15일 본조 개정)

**제17조의2(사채의 발행)** <1>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3>회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는 사채 발행의 경우 준용한다. (2022년 6월 16일 본조 신설)

## 제 3 장　주주총회

**제18조(소집의 결정)**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9조(소집 및 통지)** <1>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본사소재지 또는 인접지에 소집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2> 대표이사가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러한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의장직을 수행할 1인을 지명한다.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2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에서 '서면'은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012년 6월 13일 본조 신설)

**제23조(의결권)** 주주는 일주에 대하여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주주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경우, 회일의 3일전에 본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제2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의결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개회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

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보존·비치한다.

## 제 4 장 이사 및 이사회

**제27조(이사의 인원수와 선임)** <1> 회사는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두며,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2> 회사의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3>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4>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하되 1년이내로 연임할 수 있으며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2021년 11월 22일 본항 개정, 2025년 7월1일 본항 개정)
<2> 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일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1> 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2025년 7월 1일 본항 개정)

**제30조(이사의 직무 및 책임)**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2025년 7월 1일 본항 개정)
<3>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5>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이에 찬성한 이사와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전항의 책임이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6> 이사가 본 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그 책임을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2012년 6월 13일 제목 개정), (2022년 6월 16일 본항 개정)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의 7일전에 각 이

사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써 통지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25년 7월 1일 본항 개정)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4> 제3항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제32조(이사회의 의장)** <1>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2> 이사회 의장이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제33조(의결 및 의사록의 작성)**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2012년 6월 13일 단서 신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 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개정)
<3>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2025년 3월 31일 본항 개정)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9.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5>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2025년 3월31일 본항 신설)
<6>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25년 3월31일 본항 신설)

**제34조(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2025년 3월 31일 본항 개정) (2025년 7월 1일 본항 개정)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6.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등 제반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의 보수)**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동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2025년 7월 1일 본항 개정)

**제36조(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017년 7월 21일 본조 개정, 2025년 7월 1일 본조 개정)

## 제 5 장 계 산

**제37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2년 6월 13일 본조 개정)

[2014년 1월 1일 시행]

**제38조(이익금의 계상)** <1> 회사는 제수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에서 제지출금 및 차년도에 이월할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한다.

<2> 전 항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보험관계 법규에 의하여 이를 적립한다.

**제39조(이익금의 처분)** <1> 회사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자본총액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의 금액)
2. 주주배당금
3. 차년도이월금

<2> 전 항 이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주주배당금은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이사회에서 승인받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단서 신설), (2017년 7월 21일 본항 개정)

**제40조(주주배당금)**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017년 2월 15일 본조 개정)

**제4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회사의 대표이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2022년 6월 16일 본항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 항 각 호의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022년 6월 16일 본항 개정)

1.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3>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22년 6월 16일 본항 개정)

<6>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2년 6월 16일 본항 개정)

(2012년 6월 13일 전문 개정)

**제4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며, 그 사실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2017년 2월 15일 본조 개정)

## 제 6 장 보 칙

**제43조(위임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기타 법령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1. 서기 1954년 12월 2일 제정
2. 서기 1957년 5월 20일 개정
3. 서기 1958년 1얼 7일 개정
4. 서기 1963년 9월 22일 개정
5. 서기 1965년 6월 18일 개정
6. 서기 1971년 5월 15일 개정
7. 서기 1971년 9월 13일 개정
8. 서기 1973년 9월 6일 개정
9. 서기 1973년 10월 6일 개정
10. 서기 1974년 4월 29일 개정
11. 서기 1974년 12월 21일 개정
12. 서기 1978년 4월 15일 개정

13. 서기 1980년 12월 3일 개정
14. 서기 1981년 4월 1일 개정
15. 서기 1982년 2월 15일 개정
16. 서기 1982년 6월 14일 개정
17. 서기 1983년 6월 8일 개정
18. 서기 1985년 6월 12일 개정
19. 서기 1991년 11월 28일 개정
20. 서기 1995년 6월 14일 개정(경과조치) 서기 1995년 6월 14일 개정내용중 본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21. 서기 1996년 6월 17일 개정
22. 서기 1996년 12월 4일 개정
23. 서기 1999년 7월 20일 개정
24. 서기 1999년 11월 23일 개정
25. 서기 2000년 1월 24일 개정
26. 서기 2000년 6월 28일 개정
27. 서기 2000년 7월 5일 개정
28. 서기 2002년 3월 2일 개정
29. 서기 2003년 9월 5일 개정
30. 서기 2004년 11월 11일 개정
31. 서기 2007년 1월 18일 개정
32. 서기 2010년 6월 25일 개정
33. 서기 2010년 11월 19일 개정
34. 서기 2012년 6월 13일 개정 및 발효. 단, 정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의 사업연도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2013년의 사업연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5. 서기 2013년 2월 15일 개정
36. 서기 2017년 2월 15일 개정
37. 서기 2017년 7월 21일 개정
38. 서기 2021년 11월 22일 개정
39. 서기 2022년 6월 16일 개정
49. 서기 2025년 3월 31일 개정
50. 이 정관은 2025년 7월 1일 또는 당사의 최대주주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의 양도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루어진 날 중 늦은 날짜부터 시행한다.

| 정책(규정, 지침) 번호<br>Number | 규정 | 규정 제목<br>Name | 지배구조내부규범 |
|---|---|---|---|
| 주관부서<br>Responsible Dept. | 전략기획팀 | 적용범위<br>Apply To | 회사전반 |
| 결재 그룹<br>Authorization Group | 내부통제위원회 | 초안 시행일자<br>1st Version Date | 2004.1.15. |
| 개정판 승인일자<br>Approval Date | 2025.11.06. | 개정판 시행일자<br>Effective Date | 2025.11.06. |

| 버전<br>Version # | 변경내용<br>Change Description | 변경일자<br>Date | 작성자<br>Author | 검토자<br>Reviewer | 승인자<br>Approver |
|---|---|---|---|---|---|
| V1 | 기관별 전결사항 마련 | 2005.06.14. | 김대수 | 조우현 | 이사회 |
| V2 | 투자위원회 폐지 및 문구 수정 | 2006.01.12. | 김대수 | 조우현 | 이사회 |
| V3 | 사규 명칭 변경 | 2006.05.11. | 김대수 | 조우현 | 이명재 |
| V4 | 별표 중 일부 | 2007.01.18. | 이희옥 | 조우현 | 이사회 |
| V5 | 별표 중 일부 | 2007.04.03. | 이희옥 | 조우현 | 이사회 |
| V6 | 감사위원회 및 별표 일부 개정 | 2009.05.06. | 이희옥 | 조우현 | 이사회 |
| V7 | 보수위원회 설치 | 2009.09.01. | 조성민 | 조우현 | 이사회 |
| V8 | 생명보험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 | 2010.06.25. | 조성민 | 조우현 | 이사회 |
| V9 |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권한 조정 | 2010.08.18. | 조성민 | 조우현 | 이사회 |
| V10 | 경영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권한 조정 | 2012.02.01. | 조성민 | 조우현 | 이사회 |
| V11 | 개정상법 반영 및 별표 권한조정 | 2012.08.30. | 조성민 | 조우현 | 이사회 |
| V12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반영 | 2015.07.01. | 이선명 | 양수지 | 이사회 |
| V13 |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의 승인권자를 이사회로 조정 | 2015.12.11. | 이선명 | 양수지 | 이사회 |
| V14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반영 사규명칭 개정(이사회운영규정->지배구조내부규범) | 2016.10.27. | 이해원 | 양수지 | 이사회 |
| V15 | 정기이사회의 개최 주기를 변경 | 2017.03.31. | 이선명 | 양수지 | 이사회 |
| V16 |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승인항목 추가및 변경 | 2017.09.21 | 김화 | 양수지 | 이사회 |
| V16.1 | 지배구조팀이 법무실 산하에서 CEO Direct Support 산하로 이동 | 2020.06.15 | - | - | - |

| 버전<br>Version # | 변경내용<br>Change Description | 변경일자<br>Date | 작성자<br>Author | 검토자<br>Reviewer | 승인자<br>Approver |
|---|---|---|---|---|---|
| V17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반영 | 2021.04.01 | 홍지연 | 김문정 | 이사회 |
| V18 | 지배구조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 개정하고 문구를 명확화 | 2022.12.15 | 홍지연 | 김문정 | 이사회 |
| V19 | 별표 일부 항목 전결사항 변경 | 2023.06.01 | 허가 | 김문정 | 이사회 |
| V20 | 경영위원회 항목 삭제 | 2024.07.01 | 허가 | 김문정 | 이사회 |
| V21 |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위원회 설립 관련 법률 반영 | 2025.03.31 | 허가 | 김문정 | 이사회 |
| V22 | 그룹사 편입에 따른 규정의 통일성 확보 | 2025.07.01 | 허가 | 김문정 | 내부통제위원회 |
| V23 | 그룹사의 규정 방식과 일관성 확보 | 2025.11.06 | 홍지연 | 최근녕 | 내부통제위원회 |

## 목적 (Purpose)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주주와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

## 개요 (Summary)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권한, 운영 방법 등을 정하고 각 기관별 전결사항을 정함.

## 목차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이사회**
제 1 절 권한 및 구성
제 2 절 이사
제 3 절 회의
**제 3 장 이사회내 위원회**
제 1 절 통칙
제 2 절 감사위원회
제 3 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 4 절 위험관리위원회
제 5 절 보수위원회
제 6 절 내부통제위원회
**제 4 장 임원**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2 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 3 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 6 절 보수위원회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6 장 기 타**
부칙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주주와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2017. 9. 21]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10. 27]

## 제 2 장 이사회

### 제 1 절 권한 및 구성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승인하며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규정을 따른다. 단,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2025. 11. 6.]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개정 2015. 6. 24., 2025. 10. 1.]

**제 4 조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의 전문 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2.12.15.]

② 이사회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로 구성하여 총 5 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사외이사는 3 명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신설 2025. 11. 6.]

③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신설 2025. 11. 06.]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신설 2025. 11. 06.]

**제 5 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한다.

② 제 1 항의 평가와 관련한 절차와 항목 등 기타 세부사항은 참여도, 기여도,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10. 27., 개정 2024. 6. 21.]

## 제 2 절 이사

**제 6 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는 금융관련 분야에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여야하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6. 10. 27., 개정 2021. 4. 1., 2025. 7. 1.]

**제 7 조 (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2 년이내로 하되 1 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으며 6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일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④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 동안의 평가결과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사회가 정한 평가기준에서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7., 2025. 7. 1.]

**제 8 조 (이사 퇴임 사유 및 절차)**

① 이사의 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경우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0. 27.]

**제 9 조 (역할 및 권한)**

① 이사는 이사회 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②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이사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6. 10. 27.]

**제 10 조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② 사외이사는 제 1 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 참여 등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시 활동에 대해 퇴직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기타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계열회사 및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이사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 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비영리법인등이 해당 회사로부터 기부금등을 받는 경우 이사회에 미리 보고할 것
3.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 년간의 기부금 등을 보고할 것

**제 11 조 (선임사외이사)**

①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② 선임사외이사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6. 10. 27.]

**제 12 조 (사외이사 지원부서)**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 담당 부서를 사외이사 지원부서로 정한다.

②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침으로 정한다.

1.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3.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개정 2021. 4. 1. 개정]

## 제 3 절 회의

**제 13 조 (회의의 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단, 상정안건이 없는 경우 혹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제 14 조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및 정관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15., 2025. 7. 1.]

# 제 3 장 이사회내 위원회

## 제 1 절 통칙

**제 15 조 (의사록)**

① 의사록은 영구 보관한다.

② 의사록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른다.

**제 16 조 (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06. 21.]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회사는 제 1 항의 위원회 외에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31.]

**제 17 조 (위원회 운영 및 권한의 위임)**

①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중 본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0. 27., 2025. 11. 6.]

②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규정에서 정한 각 부의사항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하며, 상법에 따라 권한의 위임이 제한되는 업무가 아닌 한 기타 업무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2025. 11. 6]

**제 18 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최소 분기 1 회 정기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은 이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6.]

**제 19 조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 6. 21., 2025. 11. 6.]

**제 20 조 (위원회의 결의의 통지 및 재결의)** 위원회의 결의 통지 및 재결의에 대하여는 상법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제 21 조 (부의절차)**

① 위원회(단, 감사위원회 제외)에 안건을 부의하는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은 승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사전통제를 거친 안건은 안건 부의 전 해당 위원회 위원(비등기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여자 포함)에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② 부의안건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은 안건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간사가 지정한 날까지 직접 또는 전자문서로 부의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의 안건에 대한 결의 후 결의 여부를 해당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사 전원과 부의안건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범의 이사회 관련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제 23 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신설 2016. 10. 27.]

## 제 2 절 감사위원회

**제 24 조 (구성)**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개정 2021. 4. 1.]

**제 25 조 (권한 및 역할)** 감사위원회 권한 및 역할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6. 24. 2025. 11. 6.]

## 제 3 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 26 조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3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제 27 조 (권한 및 역할)**
① 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6. 24., 2025. 11 .6]
② 위원회는 관련 법규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한 후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③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0. 27.]
⑤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 4 절 위험관리위원회
## (다른 정책 및 규정 등에서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는 본 규범의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제 28 조 (구성)** 위험관리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7.]

**제 29 조 (권한 및 역할)** 위험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10. 27., 2025. 11. 6.]

## 제 5 절 보수위원회

**제 30 조 (구성)** 보수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제 31 조 (권한 및 역할)** 보수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수위원회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6. 24., 2025. 11. 6.]

**제 32 조 (기본원칙)**
① 이사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 6. 24.]

### 제 6 절 내부통제위원회

**제 33 조 (구성)** 내부통제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31.]

**제 34 조 (권한 및 역할)** 내부통제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3. 31., 2025. 11. 6.]

## 제 4 장 임원

###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35 조 (임원의 범위)** 이 규범에서 임원이란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2 호와 같다.
[신설 2016. 10. 27. 개정 2021. 4. 1.]

**제 36 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다.
②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 6 조 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과 같다.
③ 이사가 아닌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지배구조법 제 30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임원(이하 '책무구조도 대상 임원'이라 한다)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6. 10. 27., 개정 2025. 3. 31., 2025. 7.1]

### 제 2 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 37 조 (이사인 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10. 27.]

**제 38 조 (이사가 아닌 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가 아닌 임원은 회사 및 관계법령 등에서 부여된 직책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② 이사가 아닌 임원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7.]

**제 39 조 (책무구조도 대상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책무구조도 대상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제 30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관리조치 및 제 2 항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31.]

## 제 3 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40 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인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본 규범 제 7 조 제 1 항에 따른다.

② 임원(등기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는 임원의 선임 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상 임원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재무관리・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⑤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 년 이상으로 한다.

⑦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내부 회계관리자 및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⑧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 6 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6. 10. 27., 개정 2025. 7. 1.]

**제 41 조 (임원의 퇴임)**

① 이사인 임원의 퇴임 기준 및 절차는 본 규범 제 8 조에 따른다.

② 이사가 아닌 임원의 퇴임 기준 및 절차는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임원의 유고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10. 27.]

##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 42 조 (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회사는 임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 및 연수제도를 운영한다. [신설 2016. 10. 27.]

**제 43 조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① 회사는 사내의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외부 교육 및 연수제도를 운영한다.

② 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 1 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7.]

##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 44 조 (임원 성과평가)**

①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경영성과와 독립된 별도의 지표 또는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임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신설 2016. 10. 27., 개정 2022.12.15.]

**제 45 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분류한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12.15.]

[신설 2016. 10. 27., 개정 2022.12.15.]

##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46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승계 절차 및 수립, 비상상황 발생 시의 비상승계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5.7.1.]

**제 47 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①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② 회사의 인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업무 지원
2.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최고경영자는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을 주요 역할로 인식하고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관리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제 48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관련 법령과 내규에서 정하는 임원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③ 최고경영자를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및 종전 임기 중의 경영 성과가 충실히 검토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

**제 49 조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5.7.1.]

**제 50 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

**제 51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며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 7 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및 제 8 조(이사 퇴임의 사유 및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최고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

## 제 6 장 기 타

**제 52 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 이사회 등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3 조 (간사)**

① 이사회 등의 간사는 다른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이사회 등의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이사회 등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의 접수·정리, 의사록의 작성·보관, 결의사항의 위원 아닌 다른 각 이사에 대한 통지 및 부의안건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에 대한 통지 업무 등 이사회 등의 운영을 보좌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03.31.]

**제 54 조 (공시)**

① 회사는 보험업법,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공시 사유 발생 시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기 공시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공시 사유 외에 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시 사유 발생 시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4., 개정 2022.12.15.]

**제 55 조 (규정 변경)**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승인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승인 사항으로 한다. 단, 법령 및 사규 개정에 따른 단순한 용어, 법령의 명칭, 조항 번호의 변경이나 단순한 조직명칭 변경, 오탈자 수정으로 인한 개정은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 6. 24., 2025. 3. 31., 2025. 11. 6.]

**부 칙**

**1. (시행)** 이 규정은 2004 년 1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04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이 규정은 2005 년 6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단, 경영위원회운영규정과 감사규정, 투자규정, 리스크관리규정 중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은 폐지한다.
**4. (개정)** 이 규정은 2006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이 RGP 는 2006 년 5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이 RGP 는 2007 년 1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 이 RGP 는 2007 년 4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 이 RGP 는 2009 년 5 월 6 일부터 시행하고, 감사위원회 RGP 는 폐지한다.
**9. (개정)** 이 RGP 는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보수위원회의 설치).
**10. (개정)** 이 RGP 는 2010 년 6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11. (개정)** 이 RGP 는 2010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12. (개정)** 이 RGP 는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3. (개정)** 이 RGP 는 2012 년 8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14. (개정)** 이 규정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5. (개정)** 이 규범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6. (개정)** 이 규범은 2017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17. (개정)** 이 규범은 2017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18. (개정)** 이 규범은 2021 년 4 월 1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9. (개정)** 이 규범은 2022 년 12 월 15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20. (개정)** 이 규범은 2023 년 6 월 1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21. (개정)** 이 규범은 2024 년 7 월 1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경영위원회의 의결의 효력은 개정 시행일 이후 업무 분장에 따라 운영결정위원회 또는 대표이사(CEO)에게 승계된다.
**22. (개정)** 이 규범은 2025 년 3 월 31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23. (개정)** 이 규범은 2025 년 7 월 1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24. (개정)** 이 규범은 2025 년 11 월 6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사규체계<br>Corporate Rules | 규정 | 지침명<br>Functional Rule Name | 이사회규정 |
|---|---|---|---|
| 주관부서<br>Responsible Dept. | 전략기획부 | 적용범위<br>Apply To | 회사전반 |
| 결재 그룹<br>Authorization Group | 이사회 | 초안 시행일자<br>1st Version Date | 2025.07.01 |
| 개정판 승인일자<br>Approval Date | 2025.11.06 | 개정판 시행일자<br>Effective Date | 2025.11.06 |

| 버전<br>Version # | 변경내용<br>Change Description | 변경일자<br>Date | 작성자<br>Author | 검토자<br>Reviewer | 승인자<br>Approver |
|---|---|---|---|---|---|
| V.1 | 이사회 규정 제정 | **2025.07.01** | 허가 | 김문정 | 이사회 |
| V.2 | 조직 관련 항목 개정 | **2025.11.06** | 홍지연 | 최근녕 | 이사회 |

| 목적 (Purpose)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따라 이사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 |

| 개요 (Summary) |
|---|
| 이사회의 구성, 운영 원칙, 회의, 위원회 등을 정함. |

| 목차 (Table of Contents) |
|---|
| **제 1 장 총칙**<br>**제 2 장 구성**<br>**제 3 장 회의**<br>**제 4 장 부의사항**<br>**제 5 장 위원회**<br>**제 6 장 기타사항**<br>**부칙** |

## 제1장 총칙

**제 1 조 (적용 근거와 범위)** 이 규정은 ABL 생명보험(이하"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승인 및 업데이트)**

① 경영지원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주관 부서이며 본 문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②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4조(사규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관계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및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 사항 및 그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제2장 구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5 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사외이사는 3 명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 5 조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제3장 회의

**제 6 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각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한다.
③ 각 이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7 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및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는 각 1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 의결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장 부의사항

**제 8 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관련사항
   - 가. 주주총회 소집
   - 나. 주주총회에 제출할 사항
   - 다.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2. 경영에 관한 사항
   - 가. 사업계획 승인
   - 나. 해산, 영업양도,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다. 자회사의 취득/매각
   - 라. 연도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승인
   - 마. 30 억원 이상의 예산승인(단 연도 영업예산 내 영업비용은 대표이사 승인사항으로 한다)
   - 바. 30 억원 이상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아웃소싱 포함)승인/폐지
   - 사. 부동산의 취득/매각(100 억원 이상)
   - 아. 기타자산의 취득/매각(30 억원 이상)
   - 자. 회사와 이사,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등을 이용하는 거래
3. 정관 및 중요 규정 등에 관한 사항
   - 가. 정관 변경 주주총회 안건 심의
   - 나. 윤리규범의 제정 및 개폐
   - 다.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라. 자문위원운영규정 제정 및 개폐
   - 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7 조에 따른 위험관리 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제정 및 변경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위원회에 위험관리기준은 위험관리위원회에 각각 위임 할 수 있다.
   - 바. 자금세탁방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사.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금지 활동관련 내부통제정책체계 감독/평가/조치결과에 대한 검토 승인
   - 아.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자. 정책의 제정 및 개폐
   - 차.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의 제정・변경
4.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정책 관한 사항
5.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마련 및 변경
7. 이사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의 선·해임 주주총회 안건 심의
   나. 이사회 의장, 선임사외이사의 선·해임
   다.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폐지와 그 위원의 선·해임 (단, 감사위원 제외)
8. 기타
   가. 준법감시인의 선·해임
   나. 위험관리책임자의 선·해임
   다. 선임계리사의 선·해임
   라.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업무 집행책임자의 선·해임
   마. 법령 등에 의한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
   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등기임원의 징계에 대한 보고 수령
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내부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 제5장 위원회

**제9조 (위원회)**

①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6.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등 제반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제6장 기타사항

**제10조 (관계인의 출석)** 이사회 등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의사록은 이사회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의사록은 제3항에 따라 모든 이사에게 발송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의사록 승인 전에 감독기관 제출·등기 등 기타 사정으로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이사회의 간사는 이사회를 운영·지원하는 임원 또는 부서장이 담당하며 이사회의 기록, 보관 및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간사는 이사회 등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의 접수·정리, 의사록의 작성·보관, 결의사항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다른 각 이사에 대한 통지 및 부의안건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에 대한 통지 업무 등 이사회 등의 운영을 보좌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 동안의 평가결과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사회가 정한 평가기준에서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부 칙**

1. (제정)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25년 11월 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사규체계<br>Corporate Rules | 규정 | 지침명<br>Functional Rule Name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
| 주관부서<br>Responsible Dept. | 인사팀 | 적용범위<br>Apply To | 회사전반 |
| 결재 그룹<br>Authorization Group | 이사회 | 초안 시행일자<br>1st Version Date | 2025.07.01 |
| 개정판 승인일자<br>Approval Date | 2025.07.01 | 개정판 시행일자<br>Effective Date | 2025.07.01 |

| 버전<br>Version # | 변경내용<br>Change Description | 변경일자<br>Date | 작성자<br>Author | 검토자<br>Reviewer | 승인자<br>Approver |
|---|---|---|---|---|---|
| V.1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 2025.07.01 | 김동진 | 이상윤 | 이사회 |

| 목적 (Purpose)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 |

| 개요 (Summary)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 방법 등을 정함. |

| 목차 (Table of Contents) |
|---|
| **제 1 장 총 칙**<br>**제 2 장 역할 및 구성**<br>**제 3 장 운영 원칙**<br>**부칙** |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 (승인 및 업데이트)**

① 인사관리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주관 부서이며 본 문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② 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 4 조(사규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및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 2 장 역할 및 구성

**제 4 조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2.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후보 추천, 상시적인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3.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임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이사의 추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2 인 이상을 포함한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은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둔다.

⑤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 3 장 운영 원칙

**제 6 조 (소집)**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1 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는 재적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지배구조내부규범(규정)에 따른 경영승계계획의 수립·점검·보완
3. 후보자 선정원칙 및 자격요건의 설정
4. 후보자 발굴,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제 9 조 (관계자의 출석)** 위원장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0 조 (의사록)**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 칙**

1. (제정) 이 규정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사규 체계 | 규정 | 규정명 | 감사위원회규정 |
|---|---|---|---|
| 주관부서 | 감사부 | 적용범위 | 회사 전반 |
| 결재 그룹 | 이사회 | 초안 시행일자 | 2025.07.01 |
| 개정판 승인일자 | 2025.11.06 | 개정판 시행일자 | 2025.11.06 |

| 버전 | 변경내용 | 변경일자 | 작성자 | 검토자 | 승인자 |
|---|---|---|---|---|---|
| V.1 | 감사위원회규정 제정 | 2025.07.01 | 허용 | 선호규 | 이사회 |
| V.2 | 결의사항에 감사업무집행책임자 및 감사보조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추가 및 용어 변경 | 2025.11.06 | 허용 | 김성준<br>선호규 | 이사회 |

| 목적 |
|---|
| 이 규정은 회사의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요 |
|---|
| 감사위원회의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결의/심의사항, 결의방법,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 및 감사업무집행책임자 또는 감사보조기구에 업무위임 사항 등을 규정함. |

| 목차 |
|---|
| 제 1 장 총칙<br>제 2 장 구성<br>제 3 장 회의<br>제 4 장 감사 및 보고<br>제 5 장 보칙<br>부칙 |

##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승인 및 업데이트)**

① 감사담당 부서는 이 규정의 주관 부서이며 본 문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② 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 4 조(사규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및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4 조 (역할)**

① 위원회는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및 본 규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회사와 그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감사와 이에 부수되는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권한)**

①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회사 및 자회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 1 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회사나 자회사의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 6 조 (의무)**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독립성)** 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경영정보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회사의 임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 2 장 구성

**제 9 조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 총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1 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 장 회의

**제 11 조 (회의 종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 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2 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견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5.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요청
6. 외부감사인선임규정의 제정 및 개폐
7.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8. 감사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
9. 감사업무집행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성과 평가

10.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성과 평가
11.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12. 관련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13.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4.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5.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6. 공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7. 외부감사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10. 감사위원회규정의 개정 및 폐지
11.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실 또는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 발견 시 보고수령
12.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의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
13. 관련법령,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14. 기타 이사회가 심의를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6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7 조 (권한위임)**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업무집행책임자에게 위임하며, 감사업무집행책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보고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그 이행 여부 점검
3. 감사업무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5. 기타 일상적인 감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 18 조 (직무대행)**

① 사안이 긴급하거나 위원의 사고 등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할 사안을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 10 조제 2 항을 준용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업무집행책임자가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이사회 보고)**

① 위원회는 감사 수행결과를 연 1 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사회 상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및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칙

**제 20 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감사업무집행책임자는 제 17 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한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외부감사인 등과의 관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감사보조기구)**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둔다.

② 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 전문성 있는 인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감사록)**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2025.11.06>**

1. (제정)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25년 11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단, 제13조 9호, 10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별도 시행한다.)

| 사규체계<br>Corporate Rules | 규정 | 지침명<br>Functional Rule Name | 보수위원회규정 |
|---|---|---|---|
| 주관부서<br>Responsible Dept. | 인사팀 | 적용범위<br>Apply To | 회사전반 |
| 결재 그룹<br>Authorization Group | 이사회 | 초안 시행일자<br>1st Version Date | 2025.07.01 |
| 개정판 승인일자<br>Approval Date | 2025.07.01 | 개정판 시행일자<br>Effective Date | 2025.07.01 |

| 버전<br>Version # | 변경내용<br>Change Description | 변경일자<br>Date | 작성자<br>Author | 검토자<br>Reviewer | 승인자<br>Approver |
|---|---|---|---|---|---|
| V.1 | 보수위원회 규정 제정 | 2025.07.01 | 지현정 | 이상윤 | 이사회 |

| 목적 (Purpose)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중 보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 |

| 개요 (Summary) |
|---|
| 보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원칙 등을 정함. |

| 목차 (Table of Contents) |
|---|
| **제 1 장 총 칙**<br>**제 2 장 구 성**<br>**제 3 장 운영 원칙**<br>**부칙** |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 (승인 및 업데이트)**

① 인사관리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주관 부서이며 본 문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② 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 4 조(사규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및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 2 장 구성

**제 4 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 장 운영 원칙

**제 5 조 (소집)**

① 위원회는 연 최소 1 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서 및 심의자료를 위원회 개최일 7 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7 조 (의결사항)**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자 결정
2. 제1호에 따라 결정된 적용대상자에 대한 성과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임원 보수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6. 비등기임원의 보수총액
7. 임원의 계약, 특별보수, 특별지원에 관한 검토 및 승인
8. 임원의 성과보너스 지급을 위한 성과 목표 및 결과 검토 및 보정
9. GEI 적용에 관한 사항 제안
10. 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 보수전략에 관한 검토 및 승인

**제 8 조 (관계자의 출석)** 위원장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9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1. (제정) 이 규정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ABL Life Insurance Co., Ltd.**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 **사규체계**<br>**Corporate Rules** | 규정<br>Standard | **규정명**<br>**Standard Name** | 위험관리위원회규정 |
|---|---|---|---|
| **주관부서**<br>**Responsible Dept.** | 리스크관리팀 | **적용범위**<br>**Apply To** | 회사전반 |
| **결재 그룹**<br>**Authorization Group** | RMC | **초안 시행일자**<br>**1st Version Date** | 2017.01.20 |
| **개정판 승인일자**<br>**Approval Date** | 2025.07.01 | **개정판 시행일자**<br>**Effective Date** | 2025.07.01 |

| **버전**<br>**Version #** | **변경내용**<br>**Change Description** | **변경일자**<br>**Date** | **작성자**<br>**Author** | **검토자**<br>**Reviewer** | **승인자**<br>**Approver** |
|---|---|---|---|---|---|
| V.1.0 |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17.01.20 | 구본기 | 정종국 | RMC |
| V.1.1 |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규 문구 수정 | 2017.08.16 | 구본기 | 정종국 | CEO |
| V.1.2 | 위험관리위원회 산하 협의회 구성 관련 개정 | 2017.09.21 | 구본기 | 정종국 | RMC |
| V.1.3 |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 2021.09.16 | 김서연 | 정종국 | RMC |
| V.1.4 | RMC 승인안건 추가반영을 위한 개정 | 2024.06.21 | 김서연 | 정종국 | RMC |
| V.1.5 |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및 주주 변경에 따른 사규체계 개정 | 2025.07.01 | 김서연 | 정종국 | BOD |

| **목적 (Purpose)** |
|---|
| 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 **개요 (Summary)** |
|---|
|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 방법 등을 정함 |

| **목차 (Table of Contents)** |
|---|
| 제 1 장 (총칙)<br>제 2 장 (구성)<br>제 3 장 (회의) |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위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이사회 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승인하고, 그 밖의 권한 및 역할은 위험관리정책 및 산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권한 및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BOD)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② 위험관리전담조직은 본 규정의 주관부서이며, 본 규정을 적어도 연 1 회 검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 제 2 장 구성

**제 3 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 의장의 선임, 권한 및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따른다.

## 제 3 장 회의

**제 4 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최소 분기 1 회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의장은 이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 규정을 따른다.

**제 5 조 (결의, 심의 및 보고사항 등)**

①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예정이율, 공시이율 체계의 변경 등) 수준의 결정
3.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파생상품거래전략의 승인 등)
5. 위험관리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지급여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가증권 재분류에 관한 사항 승인
7.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단,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반기 1 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10.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1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대체투자의 승인 단, 다음 각목의 대체투자 승인은 투자관련 심의기구인 투자위원회에 위임 가능하며, 매 분기마다 해당 심의/의결사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가. 500 억 이상 신규 대체투자
    나. 투자규정 제 19 조(위험관리)에 해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다. 중/후순위 및 고 LTV 투자 등 고위험 대체투자
    라. 기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의한 별도로 정한 승인 대상
12. 연결산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사항으로 위원회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병, 영업양도, 분할, 자회사에 대한 자본의 출자 및 신용공여 등과 같은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대한 리스크
2. 신사업 진출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금융기관 등과의 업무제휴 또는 자본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협약 체결에 대한 리스크
3.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신용공여, 주요한 계약체결(차입 포함, 단 용역계약은 제외) 등 대규모 투자((단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목적의 장기채권 매입은 제외))에 대한 리스크

③ 위원회의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관리 체제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2. 위험관리 실태 및 한도관리 현황
3. 위험 관련 모니터링 및 일상적 사업 운영에 대한 경영진을 위한 권고 등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관련 조기경보기능
4. 회사의 중요한 위험 관리 조치에 대한 권고 및 조율
5. 위험 완화 활동 및 결정의 실효성 모니터링
6. 감독기관 등의 권고사항과 규제 위반사례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7.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 현황
8. 제1항 제11호의 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신규 대체투자 자산 내역
9.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른다.

**제7조 (결의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의 접수·정리, 의사록의 작성·보관, 결의사항의 위원이 아닌 다른 각 위원에 대한 통지 및 부의안건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에 대한 통지 업무 등 위원회의 운영을 보좌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 9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의사록은 영구 보관한다.
④ 의사록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른다.

**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 (위원회 산하 협의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산하 협의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사안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 및 그에 대한 완화계획을 위험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부 칙**

1. (제정) 본 규정은 2017 년 1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2017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본 규정은 2021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본 규정은 2024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본 규정은 202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정책(규정, 지침) 번호<br>Number | 규정 | 규정 제목<br>Name | 내부통제위원회규정 |
|---|---|---|---|
| 주관부서<br>Responsible Dept. | 준법경영부 | 적용범위<br>Apply To | 전사 |
| 결재 그룹<br>Authorization Group | 이사회 | 초안 시행일자<br>1st Version Date | 2025.03.31 |
| 개정판 승인일자<br>Approval Date | 2025.6.26 | 개정판 시행일자<br>Effective Date | 2025.7.01 |

| 버전<br>Version # | 변경내용<br>Change Description | 변경일자<br>Date | 작성자<br>Author | 검토자<br>Reviewer | 승인자<br>Approver |
|---|---|---|---|---|---|
| V1 | 내부통제위원회규정 제정 | 2025.03.31 | 김헌영 | 홍선희 | 내부통제위원회 |
| V2 | 지배구조내부규범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 2025.06.26 | 김헌영 | 홍선희 | 이사회 |

## 목적 (Purpose)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이사회 내 위원회 중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

## 개요 (Summary)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운영 원칙 등을 정함.

## 목차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구 성**
**제 3 장 운영 원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내부통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승인 및 업데이트)**

① 준법경영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주관 부서이며 본 문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② 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 3 조(사규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및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개정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①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준법감시인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 제 3 장 운영 원칙

**제 5 조 (소집)**

① 위원회는 연 최소 1 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서 및 심의자료를 위원회 개최일 7 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7 조(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내부통제정책 및 규정에서 정한 기타 승인 사항
4.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5. 내부통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이 각 각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한다.

**제 8 조 (관계자의 출석)** 위원장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9 조 (간사부서)** 위원회를 지원하는 간사부서는 준법경영부로 한다.

**제 10 조 (의사록)**

① 간사부서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1 조 (내부통제협의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1. (제정) 이 규정은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통제위원회가 신설된 날부터 이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25 년 7 월 1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